제12회 지상군 페스티벌 독립기념관 태극기 전시(2014년 10월)

특별부록

1.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220
2. 서울안보대화(SDD) 225
3. 중국군 유해 송환 231

일반부록

1.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236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238
3. 남북 군사력 비교 239
4. 남북 경제지표 비교 240
5. 북한 핵문제 협의 경과 240
6.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 241
7. 남북 군사관계 일지 242
8.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251
9.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256
10.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258
11. 제45차 SCM 공동성명 260
12. 제46차 SCM 공동성명 263
13. 주요 국제 군비통제 협약 및 기구 266
14.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68
15. 파병부대별 예산 269
16. 연도별 국방비 현황 270
17.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271
18. 병사 봉급 변화 추이 272
19.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273
20. 대체복무 유형별 현황 274
21. 국방기구도 275
22.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277
23.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285

특별부록 1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1. 방공식별구역(ADIZ)이란?

'방공식별구역(ADIZ[1])'은 국가안보 목적상 항공기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2]을 말한다. 방공식별구역은 미식별 비행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에 의해 1950년에 처음으로 설정되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에 그 의미와 권한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 국가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르다. 따라서 국내법만을 근거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타국에 행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약 30개 국가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어 국제관례로 정착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7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 동 법률 제9조에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방공식별구역의 국내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2.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설정 및 조정 배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3])은 6·25전쟁 중 중공군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태평양 공군이 1951년 3월 22일에 설정하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처음 설정될 당시에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항공작전능력을 고려하여 남쪽으로는 마라도 남방 6.5NM까지만 설정함으로써 이어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비행정보구역(FIR[4])'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5])에서 전 세계의 하늘을 분할하고 해당 국가에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공역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관할하는 '인천 비행정보구역'[6]은 1963년 5월에 설정되었으며, 제주도 남방451Km(이어도로부터 255Km)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 및 주변국의 비행정보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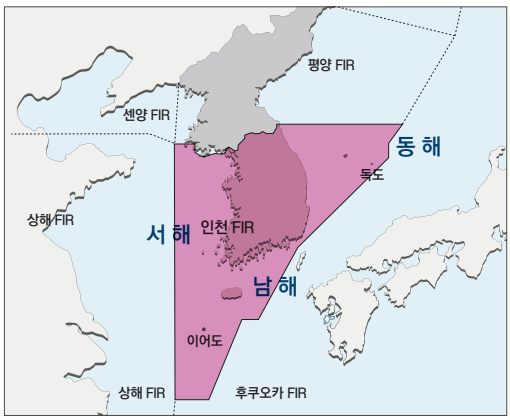

1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4 Flight Information Region
5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6 '인천 비행정보구역'은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에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ATC : Air Traffic Center)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면서 2002년 9월에 구역의 변동 없이 '대구 비행정보구역'에서 '인천 비행정보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비행정보구역과 방공식별구역 비교

구 분	비행정보구역(FIR)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주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 전문기구)	해당 국가
목 적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효율적인 비행, 조난 시 수색·구조에 필요한 정보 제공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
국제법적 근거	ICAO 협약(CHICAGO, 1944)	불명확

1969년 9월, 일본은 과거에 미군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답습하여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7]을 설정하면서 서쪽으로는 이어도 주변 수역까지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방공식별구역 외곽의 우리 비행정보구역에서 조난 사고 발생 시 우리 비행정보구역 내의 수색 구조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범위가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되면서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우리 영공 일부가 일본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 및 일본 정부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인천 비행정보구역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한미, 한일 간 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본방공식별구역의 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일본은 협의 자체를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과거 한일 방공식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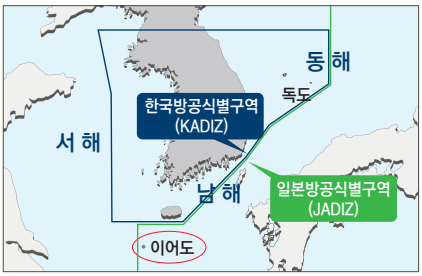

한국방공식별구역 관련 경과

1951년 3월 22일	미국 태평양 공군, 한국방공식별구역 설정
1969년	일본 정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고시(이어도 포함)
1994년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리로 조정됨에 따라 마라도·홍도 남방 영공 일부가 일본방공식별구역에 포함
2008년	한국 정부, 한국방공식별구역 관련 국내법적인 근거 마련, 한국방공식별구역 고시

2013년 11월 23일 중국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 수역 상공을 포함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3.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경과

박근혜 정부는 국제규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면서도 관련국들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였다.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직후 정부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대

7 자위대법 제84조

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관련국들이 상호 신뢰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11월 27일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11월 28일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 이후 국방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12월 1일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 한중 국방전략대화 시 정부 입장 발표 내용

① 한중 간 신뢰관계를 고려 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되었는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② 주변국들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③ 우리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은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도 국익 보호를 위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확장을 검토 중에 있음.

④ 이번 중국의 조치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우려하며, 역내 신뢰 증진 및 긴장 완화를 위해 관련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함.

한중 국방전략대화(2013년 11월)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특히 국제 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부합함은 물론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주지 않고 주변국의 영공과 이익도 침해하지 않도록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였다. 또한, 국방부와 외교부가 합동으로 관련국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함으로써 주변국들과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12월 6일에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을 확정하고 12월 8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12월 10일에 항공고시보, 12월 12일에 관보에 '국방부 고시 제2013-449호'를 통해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고시하였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15일 14시에 발효됨으로써 1951년에 미국 공군에 의해 설정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되었다.

국방부 고시 제2013-449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1.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구역 : 북위 39°00′ 동경 123°30′ - 북위 39°00′ 동경 133°00′
- 북위 37°17′ 동경 133°00′ - 북위 36°00′ 동경 130°30′
- 북위 35°13′ 동경 129°48′ - 북위 34°43′ 동경 129°09′
- 북위 34°17′ 동경 128°52′ - 북위 32°30′ 동경 127°30′
- 북위 32°30′ 동경 126°50′ - 북위 30°00′ 동경 125°25′
- 북위 30°00′ 동경 124°00′ - 북위 37°00′ 동경 124°00′
- 시작점

나. 고도 : 지표 ~ 무한대

부칙 〈제2013-449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5일 14시부터 시행한다.

■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기자회견 발표문**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12월 15일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될 것입니다.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새로이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역내 항공운항 안전 증진을 통해 관련 국가들과의 상호 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공식발표(2013년 12월)

4.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의 의의

62년 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한 것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첫째, 이번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의 일부 영공과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영토·영해와 관할수역 상공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익 증진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조정됨으로써 제주도 남방구역에서 우리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한 방공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남방 해상교통로와 항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 남방 상공에서 초계비행 중인 공군 E-737항공통제기와 F-15K 전투기 편대

이어도 관할수역 상공에서 초계비행 중인 해군 P-3C

셋째,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방 경계선을 비행정보구역과 일치시킴으로써 국제 항공질서와 민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주변국과 신뢰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예고되지 않았던 안보 위기 상황을 확고한 의지와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국익을 보장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극복하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정책의 원칙과 비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도 확보하였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차분하고 치밀하게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자주성을 제고하고 주변국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2013년 12월 15일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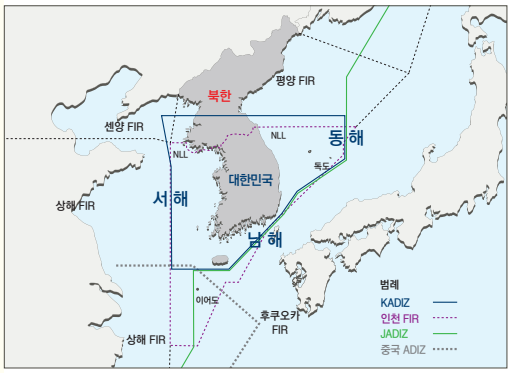

한국방공식별구역(2013년 12월 15일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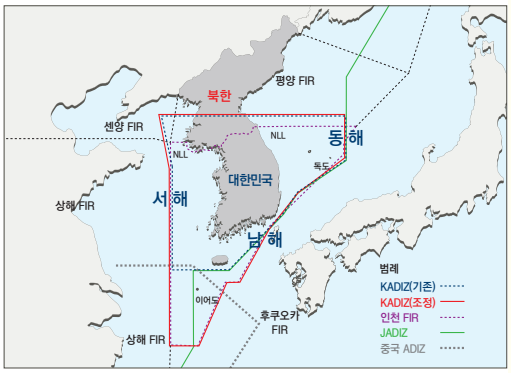

특별부록 2

서울안보대화
(Seoul Defense Dialogue, SDD)

국방부는 2012년부터 아·태 지역의 국방차관급 다자안보대화체로서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안보대화는 1991년부터 시작된 '남북군비통제세미나'를 모체로 개선·발전되어 왔다. 서울안보대화는 아·태 지역의 실질적인 안보 현안을 다루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다자안보대화체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서울안보대화와 같은 다자안보대화체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는 냉전 이후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이 부각됨에 따라 1980년대 말부터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1988년 유엔에서 동북아 평화협의회를 제안하였고, 1994년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1])를 제의한 바 있다. 현재 아·태 지역의 다자안보대화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아시아안보회의, 자카르타 국제안보대화, 캐나다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 러시아 국제안보포럼, 중국 향산(香山)포럼 등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1. 개요

| 배경 | 개별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 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다자안보대화가 확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1991년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통제를 준비하기 위해 '군비통제관실'을 신설하였으며, 국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북군비통제세미나'를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총 17회를 개최하였다. 2008년부터는 국내외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군비통제세미나'로 확대하고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국제군비통제세미나'는 학술교류 수준에서만 운영됨에 따라 지역 국가 간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대화체로 발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국방차관급과 민간 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1.5트랙의 '서울안보대화'로 발전하게 되었다.

| 목적 | 서울안보대화는 첫째, 아·태 지역 국가 간 군사적 공동이익과 관심사항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태 지역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공동이익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체가 요구되었다. 둘째, 서울안보대화는 아·태 지역 내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군사적 차원의 다자안보협력과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태 지역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의 위협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간 역사인식, 영유권 분쟁, 군비경쟁 등 다양한 안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안보협력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세계 평화를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1 NorthEAst Security Dialogue

| 특징 | 아·태 지역 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수의 대화체는 장관급이 참가하고 있지만, 국방차관이 참가하는 다자안보대화체는 서울안보대화가 처음이다. 대부분이 장관급 대화체이고 일부는 국장 이하 대화체가 있을 뿐이다. 다양한 수준의 국방당국자 간 대화와 교류를 위해 서울안보대화는 차관급 국방관료가 참가하는 대화체로 발전하고 있다. 서울안보대화는 각국의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국방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각국의 국방정책을 이해하고 국방당국자 간 신뢰를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울안보대화는 지역 내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군비통제, 통일 관련 정책의 대안과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2. 추진 경과

서울안보대화는 2012년에 발족하여 2014년까지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Cooperation for Security & Peace)'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서울안보대화의 엠블럼은 서울을 의미하는 S자가 지구를 감싸 안은 형상이다.

서울안보대화 엠블럼

〈표 1〉 서울안보대화 개최 현황

	제1회 서울안보대화	제2회 서울안보대화	제3회 서울안보대화
기 간	2012. 11. 14.~16.	2013. 11. 11.~13.	2014. 10. 29.~31.
장 소	서울 신라호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참가 국가	15개 국가, 2개 국제기구	20개 국가, 3개 국제기구	24개 국가, 3개 국제기구
대주제	더욱 안전한 아·태 지역을 위한 협력 : 과제와 해법	아·태 지역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모색	갈등에서 협력으로 : 아·태 지역 국가 간 신뢰구축 방안
세션 의제	• 아·태 지역의 공동안보 도전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 대응 및 협력방안 • 사이버 테러의 실태와 대응방안 • 국방운영 효율화 : 성공사례 및 방안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아·태 지역 포괄안보 • 글로벌 비확산과 아·태 지역 국가의 역할 • 국가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내에서의 군의 역할 • 사이버 안보에서의 국제규범 발전 방향 • 국방예산 제약 하에서의 국방 기획	• 본회의1 : 갈등에서 협력으로(기조연설) • 본회의2 : 아·태 지역 신뢰 구축과 한반도 통일 • 세션1 : 군사적 신뢰 구축과 분쟁 예방 • 세션2 : 인도적 지원 / 재난 구호와 국방협력 • 세션3 : 해양안보와 국방협력 • 세션4 : 사이버 안보 협력과 국제규범

| 제1회 서울안보대화 | 제1회 서울안보대화는 2012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었다. 아·태 지역 국가 중 양자 간 국방전략대화, 국방정책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1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였다. 개회식은 국방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황식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였다.

〈표 2〉 제1회 서울안보대화 참석국가 현황

차관급(3)	차관보급(6)	국·차장급(5)	무관(3)
한국, 필리핀, 유럽연합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태국,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인도, 중국

제1회 서울안보대화는 "더욱 안전한 아·태 지역을 위한 협력 : 과제와 해법"을 대과제로 선정하고 아·태 지역의 공동안보 도전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대응 및 협력방안, 사이버 테러의 실태와 대응방안, 국방운영 효율화 성공사례 및 방안 등을 세부 의제로 논의하였다.

제1회 서울안보대화는 매우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의회 또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관련국은 국제회의에 관심을 갖기 어려웠고, 비슷한 시기에 제4차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과 제6차 동아시아 정상회의[2]가 개최되어 참석국가가 중복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태 지역 1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고위급 국방관료가 참석하여 아·태 지역 내 권위 있는 연례 다자안보대화체로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서울안보대화는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에 부합하는 소프트 파워를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한반도 안정과 지역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태 지역내 고위급 다자안보대화체로서 성공적으로 발족하였다. 특히 사이버 워킹그룹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제1회 서울안보대화(2012년 11월)

| 제2회 서울안보대화 | 제2회 서울안보대화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아·태 지역과 유럽의 20개 국가,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하였으며, 차관급이 참석하는 국가가 2012년 3개 국가에서 12개 국가로 대폭 늘었다.

〈표 3〉 제2회 서울안보대화 참석국가 현황

차관급(12)	차관보급(5)	국·차장급(3)	무관(3)
한국, 몽골,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유럽연합, 유엔	말레이시아, 미국, 미얀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러시아, 영국, 중국

제2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사무총장 람베르토 자니에르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오찬을 주관하였다. 민간 안보 전문가 및 각국 대표 간 조찬간담회를 통해 서울안보대화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을 설명하고 지지 기반을 구축하였다.

제2회 서울안보대화는 '아·태 지역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대주제로 아·태 지역 공동안보, 사이버 안보, 국방운영 효율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사이버안보 분야는 서울안보대화의 특화된 주제로서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아태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추진하였다. 또한 각국의 사

2 참가 국가는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과 러시아 등 총 18개국이며, 11월 19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음

이버안보 분야 실무요원이 참석하는 사이버 워킹그룹 준비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막기 위한 국제 규범을 형성해 나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제2회 서울안보대화는 신뢰외교를 통해 지역 내 평화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울안보대화가 아태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가 간 상호 이해를 토대로 '대화'로 시작된 신뢰가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홍원 국무총리 환영사(2013년 11월)

유럽안보협력기구 사무총장 기조연설(2013년 11월)

더불어 아·태 지역 주요 국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대량살상무기 폐기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한다는 메시지와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도록 개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의미가 있다.

| 제3회 서울안보대화 | 제3회 서울안보대화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었다. 아·태 지역 24개 국가와 유럽 3개국, 3개의 국제기구를 초청하였다. 제3회 행사에서는 군사 교류협력 확대 차원에서 터키,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4개국을 추가 초청하여 총 24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였다.

〈표 4〉 제3회 서울안보대화 참석국가 현황

차관급(13)	차관보급(3)	국·차장급(8)	무관(3)
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일본, 칠레, 캄보디아, 캐나다, 터키, 필리핀, 페루,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 유엔	라오스, 미국, 태국	뉴질랜드, 몽골,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중국, 콜롬비아, 호주	러시아, 영국, 인도

제3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내온 영상메시지도 상영되었다.

제3회 서울안보대화의 대주제는 아태지역, 특히 동북아지역에서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갈등에서 협력으로: 아태지역 국가 간 신뢰구축 방안'으로 선정하였다. 세부 의제는 아태지역의 주요 안보 현안인 한반도 통일, 분쟁예방, 인도적 지원/재난구호, 해양안보와 사이버 안보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이번 대화의 가장 큰 의미는 차관급 국방 당국자들이 평화와 협력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주요국 차관급 국방 당국자들의 만남 자체가 신뢰 구축 과정의 의미 있는 진전인 것이다.

특히 주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 비전과 국방정책에 대한 참가국들의 이해도를 높인 점은 큰 성과로 꼽힌다. 우리 정부 참가자와 전문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그리고 한반도 통일비전을 소개하였고, 각국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판과 조언을 들었다. 특히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구(舊)동독 지역 초대 사령관과 독일 국방차관을 역임한 요르크 쉔봄은 통일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제3회 서울안보대화 국방부장관 개회사(2014년 10월)

2014 서울안보대화 세션 4

공동경비구역(JSA) 방문(2014년 10월)

서울안보대화가 지닌 또 다른 성과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논의다. 우리는 2012년 첫 회의 때부터 글로벌 차원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왔다. 사이버안보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거대 담론과 실무정책을 연결시켜 조직화하는 노력을 벌임으로써 서울안보대화를 격이 다른 안보대화로 격상시켜 나가고 있다.

참가국 대표 간 양자 및 다자대화는 향후 서로의 정치적·군사적 신뢰를 높이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아울러 참가국 대표 간에 축적된 우정은 국가 간 갈등이나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평화와 협력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회 서울안보대화는 중국이 처음으로 소장급을 단장으로 9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일본은 차관을 단장으로 8명을 파견하는 등 주변국의 관심도가 증가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여 공감대를 확산하였으며, 양자대담에서 방산외교를 실시하였고,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방산업체 견학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산수출 여건 조성에도 기여하였다. 국방 사이버 분야의 새로운 대화체로서 사이버 워킹그룹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참가국 대표들이 공동경비구역(JSA[3])

3 Joint Security Area

을 방문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을 경험하고, 경복궁·인사동 등 문화탐방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회도 되었다.

| 향후 추진 | 초청국가를 중앙아시아 국가, 멕시코, 스리랑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안보대화는 아태지역 국가 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1회 서울안보대화에서는 서울안보대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국방전략대화 또는 군사교류협력이 긴밀한 국가를 대상으로 초청하였으며, 군사교류협력 확대 차원에서 초청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북아와 관련된 이슈에서 글로벌한 이슈로 의제를 다양화하고, 사이버 안보 의제는 특화시켜 여타 안보포럼과 차별화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관련 의제와 동북아 안보 의제를 포함하여 글로벌한 이슈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룰 것이다. 특히 사이버안보 의제는 서울안보대화에서 특화시켜 추진 중인 의제이다. 여러 국가가 공감하고 사이버안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고 사이버안보 세션과 사이버 워킹그룹회의를 적절하게 안배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자 회의', '동북아 소다자 회의' 등 당국자 회의를 정례화하고, 양자대담도 활성화하는 등 국방외교·협력을 다각화해 나갈 것이다. 서울안보대화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당국자 간 회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대표단장들만의 회의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동북아 소다자 회의를 개최하여 동북아의 안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회의체로의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방 분야의 고위급인사가 참석한 계기를 이용하여 양국 간 군사 분야에서 필요한 대화 기회를 활성화하여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정보통신(IT) 기술의 선진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IT기술을 접목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질의응답 체계, 사회자 진행, 출입보안 체계 등 IT 기술을 이용한 회의진행 체계를 구현하여 IT 선진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IT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중국군 유해 송환

1. 역사적 배경

1953년 7월 27일 유엔사 측과 공산군 측은 정전협정을 통해 휴전 후에도 "상대방 관할구역에서 발견된 상대방 시체를 발굴, 반출해 간다"고 합의[1]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1954년 8월 제47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양측은 「쌍방 군사인원 시체 인도·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에 관한 문서에 합의하고 1954년 9월에서 10월 말까지 유엔사 측은 1만 3천5백여 구의 공산군 측 유해를, 공산군 측은 약 4천여 구의 한국군과 유엔군 유해를 상호 인도하였다.

이후 추가로 발굴된 중국군 유해는 정전협정에 따라 1981년부터 1997년 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43구가 판문점을 통해 중국 측으로 인계되었다. 그러나 2000년 9월 유엔사 측이 북한 측에 중국군 유해 1구를 인수해 갈 것을 요구[2]하자 북한 측은 "중국군 유해는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므로 알아서 처리하라"며 인수를 거부함으로써 중국군 유해의 송환은 중단되었다.

2. 추진 배경

2013년 6월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1997년 이후부터 중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중국군 유해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류엔동 부총리에게 6·25전쟁 시기 중국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중국 측도 긍정적으로 화답하였다. 2013년 11월 중국 측이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자는 의사를 우리 측에 통보해 오면서 한중 간 본격적으로 실무협의가 진행되었다.

3. 추진 경과

2013년 12월 4일 중국 민정부 보훈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중국 측 '유해 송환 실무협조단'이 방한하여 제1차 한중 유해 송환 실무협의가 진행되었다. 우리 측은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문상균 준장이, 중국 측은 민정부 보훈국 리귀광 부국장이 협상 대표가 되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1차 한중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중국 명절인 청명절(4월 5일) 이전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다"는 실무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한중 유해 송환 실무협조단은 중국군 유해 송환의 시기, 방법, 인도식 행사 등 '한중 실무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04년 1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차 한중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2014년 3월 28일 인천공항에서 한중 공동 주관으로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1 정전협정 13항 'ㅂ'목

2 2000년 9월 9일 3차 비서장급 접촉 시 유엔사측의 중공군 유해 1구 인수 요구에 대해 북한 측은 "중국군 유해는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므로, 중국대사관을 통하든 당신 측이 알아서 처리하기 바람"이라고 답변하였음

■ 「재한(在韓) 중국군 유해 송환에 관한 실무합의서」 내용

ㅇ 중국군 유해와 관련 유품을 2014년 3월말 중국 측에 인도
- 유해 인도 장소는 '인천공항'으로 하고, 인도일자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
- 유해 및 유품 인도 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상호 교환

ㅇ 유해 송환 준비와 관련된 제반 작업은 우리 측에서 실시
- 유해 발굴 개토 및 입관 시 중국 측 관계자 현장 입회, 추모활동 진행
- 유해 입관을 위한 관은 중국 측에서 맞춤 제작하여 제공

ㅇ 유해 인도 이후 중국으로의 송환은 중국 측 책임 하에 추진하고, 유해·유품에 대한 출입국 통관 등 행정절차는 우리 측에서 제공

ㅇ 향후 추가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는 이번 절차를 준용, 협의 처리

제1차 한중 유해 송환 실무협의(2013년 12월)

4. 유해 송환 준비

실질적인 유해 송환 준비는 2013년 12월 19일 파주 '북한군·중국군 묘지'에서 중국 측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군 유해의 개토식 행사를 기점으로 착수되었다. 이후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문 발굴요원, 25사단 발굴 지원병력 등 연인원 14,000여 명을 투입하였다. 혹한의 악조건 속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중국군 유해를 수습하여 인근에 위치한 임시감식소로 이송하였다.

중국군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문 감식관들에 의해 유해 세척 및 건조, 정밀감식, 유해와 유품, 감식기록지 일치화 과정을 거쳐 송환 준비가 이뤄졌다.

3월 17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25사단 임시감식소에서 중국 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입관식이 거행되었으며 437구의 중국군 유해는 중국 풍습에 따라 중국 측이 제공한 전통관에 입관되었다. 입관이 완료된 유해는 임시 안치되었다가 인도식 행사 하루 전에 437명의 25사단 장병에 의해 인천공항으로 이송되어 중국 측 민항기에 안치되었다.

① 유해 개토식/재발굴 ▶ ② 유해 세척/건조 ▶
③ 정밀감식 ▶ ④ 유해·유품·기록지 세트화 ▶ ⑤ 입관 ▶
⑥ 임시 안치 ▶ ⑦ 유해 이송

유해 송환 준비 절차

5. 중국군 유해 인도식

2014년 3월 28일 인천공항에서 한국 측 백승주 국방부차관과 중국 측 민정부 국장 공동 주관으로 한국 측과 중국 측 주요 인사, 유엔사 측 관련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유해 인도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우리 측 운구병이 중국 측 운구병에게 유해를 인계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참석자들은 이 순간이 한중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임을 직감하였다. "생명 소생의 계절에 내리는 봄비가 소리 없이 만물을 푸르게 변화시키듯이 '중국군 유해 송환'이 봄비가 되어 한중 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장강(長江)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국방부차관의 송환사에 중국 측은 "이번 유해 송환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고 화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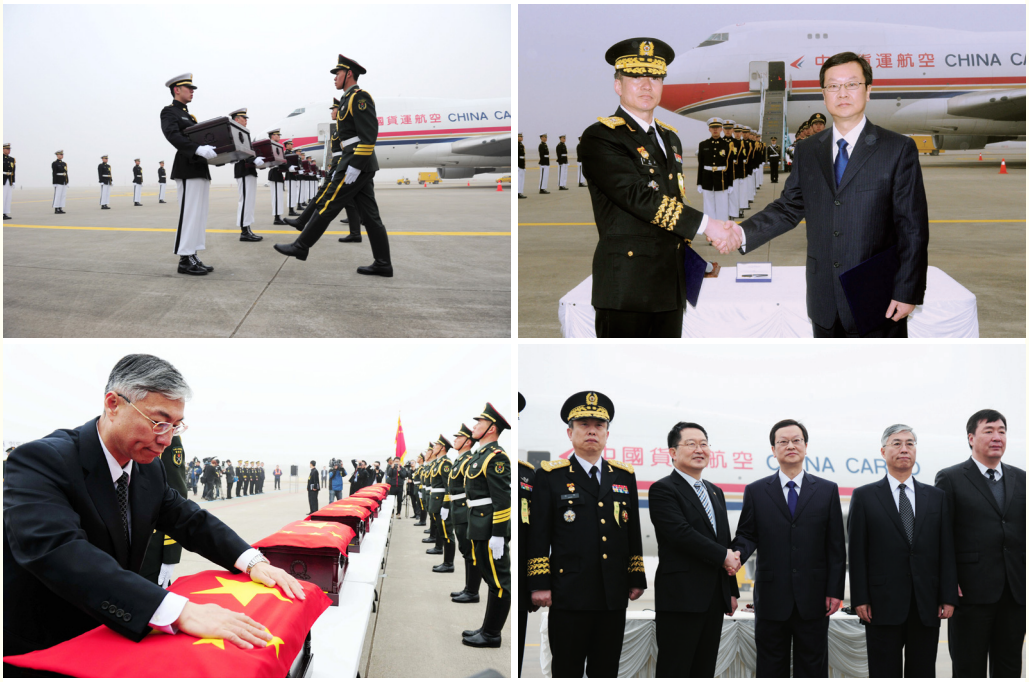

중국군 유해 인도식 행사(2014년 3월)

인천공항에서 행사를 마친 후 중국군 유해 437구는 중국 민항기를 이용해 중국 선양(瀋陽)공항으로 이송되어 현재 '선양 중국군 능원' 내에 새로 조성된 별도 묘역에 안치되었다.

6. 성과 및 의의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었던 437구의 대규모 중국군 유해가 송환된 이후 중국 내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표현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시진핑 국가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고위급 인사들은 성공적인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해 노력해 준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명했으며, 6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중국군 유해를 맞이하면서 13억 중국 국민들 또한 "과거의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묘역을 정성스럽게 관리해 주고 질서정연하게 인도식을 진행해 준 조치에 감동했다"면서 진심어린 감사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의와 시진핑 주

석의 화답으로 진행되었던 '437구의 대규모 유해 송환'이 중국 국민들의 진심 어린 가슴 속 변화를 이끌어내었던 것이다.

이번 중국군 유해의 송환은 한중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행된 만큼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 측의 유해 발굴 과정에서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매년 정례적으로 송환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만큼 중국군 유해 송환은 앞으로 매년 정례화되어 한중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이다. 남북 간에도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등 인도주의적 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향후 추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4년 4월부터 11월 말까지 강원도 인제, 양구, 철원, 경기도 파주, 포천 등 27개 지역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실시하여 총 1,173구의 유해를 발굴하였으며 그중 중국군 유해는 68구를 발굴하였다. 발굴된 중국군 유해는 감식 작업을 거쳐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8지구 봉안소에 임시로 안치되었다.

국방부는 2014년 1월 '한중 실무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중국군 유해를 2015년 청명절(4월 5일) 이전에 중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5년 1~2월 중에 한중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송환 일자 및 절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병력

단위 : 명

구 분	미 국	일 본	중 국	러시아
계	**1,492,200**	**247,150**	**2,333,000**	**845,000**
육 군	586,700	151,050	1,600,000	250,000
해 군	327,700	45,500	235,000	130,000
공 군	337,250	47,100	398,000	150,000
기 타	해병대 199,350 해안경비대 41,200	통막 3,500	제2포병 100,000	공수 35,000 전략 80,000 지휘/지원 200,000

육군

구 분	미 국	일 본	중 국	러시아
사단(개)	10	사단9, 여단6	30	8(86개 여단)
전차(대)	5,838	777	6,840	20,550
경전차(대)	–	–	750	–
보병전투차량(대)	6,559	68	3,450	15,860
정찰차(대)	1,928	152	200	2,200
장갑차(대)	25,209	803	4,350	15,700
견인포(문)	1,242	422	6,140	12,765
자주포(문)	1,469	167	2,180	5,870
다련장포(문)	1,205	99	1,842	4,026
박격포(문)	2,483	1,085	2,586	3,500
대전차 유도무기(기)	SP 1,512	SP 30 휴대용 1,610	SP 400	–
지대공 미사일(기)	1,296	700	278	1,570
헬기(대)	4,250	427	763	1,278
항공기(대)	226	12	8	–

해군

구 분		미 국	일 본	중 국	러시아
잠수함(척)		58	18	66	53
전략핵잠수함(척)		14	–	4	11
항공모함(척)		10	–	1	1
순양함(척)		22	–	–	5
구축함(척)		62	36	15	18
호위함(척)		13	11	54	9
초계함·연안전투함정(척)		55	6	216	82
소해함(척)		13	30	53	53
상륙함(척)		30	4	85	20
상륙정(척)		245	20	152	19
지원함(척)		71	80	212	636
전투기(대)		823	–	264	41
헬기(대)		670	134	103	212
해병 전력	해병사단(개)	3	–	여단 2	여단 3
	전차(대)	447	–	73	200
	정찰차량(대)	252	–	–	60
	상륙돌격장갑차(대)	1,311	–	–	300
	병력수송장갑차(대)	2,225	–	152	800
	야포(문)	2,071	–	40	365
	대전차미사일(기)	2,299	–	–	72
	UAV(대)	100	–	–	–
	항공기(대)	470	–	–	–
	헬기(대)	546	–	–	–

공군

구 분	미 국	일 본	중 국	러시아
전략폭격기(대)	143	–	–	141
폭격기(대)	–	–	90	–
정찰기(대)	350	17	55	114
지휘기(대)	4	–	5	6
전투기(대)	1,258	340	1,505	1,138
수송기(대)	431	65	327	390
급유기(대)	226	5	10	20
조기경보기(대)	33	17	8	23
훈련기(대)	1,130	248	950	220
헬기(대)	143	56	50	1,042
민간예비(대)	1,413	–	–	–
전자전기(대)	14	3	13	–

* 출처 : 「The Millitary Balance 2014」(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4. 2.), 일본 방위백서(2014. 8) 등 관련자료 종합

일반부록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2013년 기준

국 가	GDP (억 달러)	국방비 (억 달러)	GDP 대 국방비 (%)	병 력 (천 명)	국민 1인당 국방비 (달러)
대한민국	12,600	305	2.42	630	596
미 국	162,000	6,004	3.7	1,492	1,896
일 본	51,500	510	0.99	247	401
중 국	90,200	1,122	1.24	2,333	83
러시아	22,100	682	3.08	845	478
대 만	4,950	103	2.08	290	443
영 국	24,200	570	2.35	169	900
프랑스	27,400	524	1.91	222	794
독 일	36,000	442	1.23	186	545
이스라엘	2,540	152	5.98	177	1,967
이집트	2,650	53	1.99	439	62
사우디아라비아	7,460	596	7.99	234	2,211
호 주	15,900	260	1.63	56	1,166
터 키	8,520	107	1.26	511	133
말레이시아	3,280	50	1.52	109	169
태 국	4,250	62	1.46	361	92
싱가포르	2,870	99	3.44	73	1,807
캐나다	18,400	164	0.89	66	474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4」(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4. 2.) 등 관련자료 종합
* 병력은 2014년 기준

남북 군사력 비교

2014년 10월 기준

구 분				한 국	북 한
병력 (평시)	육 군			49.5만여 명	102만여 명
	해 군			7.0만여 명(해병대 2.9만여 명 포함)	6만여 명
	공 군			6.5만여 명	12만여 명
	계			**63만여 명**	**120만여 명**
주요 전력	육군	부대	군단(급)	12(특전사 포함)	15
			사 단	44(해병대 포함)	81
			기동여단	14(해병대 포함)	74(교도여단미포함)
		장비	전 차	2,400여 대(해병대 포함)	4,300여 대
			장갑차	2,700여 대(해병대 포함)	2,500여 대
			야 포	5,600여 문(해병대 포함)	8,600여 문
			다련장/방사포	200여 문	5,5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60여 기(발사대)	100여 기(발사대)
	해군	수상함정	전투함정	110여 척	43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60여 척
			기뢰전함정	10여 척	2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4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공군	전투임무기		400여 대	820여 대
		감시통제기		60여 대(해군 항공기 포함)	30여 대
		공중기동기		50여 대	330여 대
		훈련기		160여 대	170여 대
	헬기(육·해·공군)			690여 대	300여 대
예비병력				310만여 명 (사관후보생, 전시근로소집, 전환/대체 복무 인원 등 포함)	770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포함)

*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 부대·장비 항목에 해병대 부대·장비도 포함하여 산출
* 북한군 야포문수는 보병 연대급 화포인 76.2㎜를 제외하고 산출
* 질적 평가 표현이 제한되므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양적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반부록 4

남북 경제지표 비교

구 분	한 국		북 한		한국/북한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명목GNI(십억 원)	1,391,596	1,441,064	33,479	33,844	41.6배	42.6배
1인당 GNI(만 원)	2,783	2,870	137	138	20.3배	20.8배
경제성장률(%)	2.3	3	1.3	1.1	–	–
무역 총액(억 달러)	10,675	10,752	68.1	73.4	156.7배	146.5배
총인구(만 명)	5,000	5,022	2,443	2,455	2.0배	2.0배

* 출처 : 한국은행

*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1993년부터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 GNP 대신 사용 (GNI≒GNP)

일반부록 5

북한 핵문제 협의 경과

(2012. 11. 4. ~ 2014. 11. 30)

일 자	주요 내용
2012. 12. 12.	•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성공) – 동창리 발사장에서 남향 발사, 잔해물 서해상 낙하
2013. 1. 23.	• 유엔 안보리 결의 제2087호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대북 제재 대상 및 품목 확대, 자동개입 조항 추가
2. 12.	• 3차 핵실험
3. 8.	• 유엔 안보리 결의 제2094호 – 기존 제재 의무화, 사치품 명시, 제재 대상 추가(북 외교관 불법활동 감시 포함)
3. 9.	•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 핵보유국, 위성 발사국 지위 영구화할 것
4. 2.	• 북 원자력총국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
8. 29.	• 영변 2원자로 가동 개시
2014. 3. 30.	• 북 외무성 성명 – 핵실험 위협,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언급
4. 21.	•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 북핵 개발은 정당한 자위적 억제력임을 주장

일 자	주요 내용
5. 23.	• 미·북 몽골에서 민간채널 접촉 – 북핵 개발은 정당한 자위적 억제력임을 주장
5. 29.	• '대북 제재 이행법안' 미 하원 외교위원회 통과 –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금융 거래 봉쇄
7. 17.	• 유엔 안보리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7. 28.	• 유엔 북 청천강호 운영사(원양해운관리회사) 제재 대상에 추가
9. 26.	• IAEA '북핵 규탄결의안' 채택 – 영변 원자로 재가동 등 북의 핵개발을 규탄

일반부록 6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

개발 경과(2012. 11. 4 ~ 2014. 11. 30)

일 자	주요 내용
2012. 12. 12.	• 장거리 미사일 발사(개량형 대포동 2호, 북한 측 : 위성발사 주장)
2014. 2. 27.	• SCUD 미사일 동해로 2발 시험발사(추정)
2014. 3. 3.	• SCUD 미사일 동해로 2발 발사
2014. 3. 26.	• 노동 미사일 동해로 2발 발사
2014. 6. 29.	• SCUD 미사일 동해로 2발 발사
2014. 7. 9.	• SCUD 미사일 동해로 2발 발사
2014. 7. 13.	• SCUD 미사일 동해로 2발 발사
2014. 7. 26.	• SCUD 미사일 동해로 1발 발사

제원

구 분	SCUD-B	SCUD-C	노 동	무수단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신형 미사일
사거리(㎞)	300	500	1,300	3,000 이상	2,500	10,000	미상
탄두중량(㎏)	1,000	700	700	650	500	650~1,000(추정)	미상
비 고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시험 발사	개발 중	개발 중

남북 군사관계 일지

(2012. 11. 4. ~ 2014. 11. 30)

북 측	일 자	남 측
조평통 대변인 문답,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 행사 관련 "응당한 징벌" 주장	2012. 11. 17.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 문답, "제2의 연평도 불바다로 이어지게 될 것" 위협	11. 21.	
	11. 23.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 추모식 개최 * "北 도발 철저히 응징"(김황식 총리)
	11. 27.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 "北, 천안함·연평도 포격도발보다 더 심한 도발 가능성" (김관진 국방부장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광명성 3호-2호기 위성 12. 1.~22. 발사" 발표	12. 1.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 표명
	12. 4.	한·미·일 고위급 회담(워싱턴),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대응 논의
	12. 6.	한미, 대북정보감시태세(워치콘) 3단계→2단계 상향 조정
	12. 7.	국토해양부,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선박 우회 항행 조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문답, "광명성 3호-2호기 일련의 사정이 제기되어 발사시기 조절문제 신중히 검토"	12. 8.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위성발사 예정일을 12. 29.까지 연장" * "1단계 로켓 기술 결함 발견"	12. 10.	
장거리 미사일 발사(09:49) * "09:59 궤도에 진입, 김정일 유훈 관철"(조중통)	12. 12.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정부성명 발표 국회 국방위,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
김정은, 위성발사장 방문 보도	12. 14.	
	12. 19.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
최춘식 등 과학자·기술자 100여 명 공화국 영웅 칭호 수여	12. 22.	애기봉 등탑 점등(~2013. 1. 2.)
	12. 26.	서해 해상사격훈련
김정은, 신년사에서 "남북 대결상태 해소" 언급	2013. 1. 1.	
국방위 담화 "대화와 대결 중 선택" 주장	1. 2.	
조평통 성명, "파멸을 면치 못할 것" 위협	1. 3.	
외무성 비망록, "유엔군사령부 해체" 촉구	1. 14.	
	1. 22.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087호 채택 * 미사일 발사 규탄, 대북제재 확대·강화
외무성 성명, "핵억제력 포함 물리적 대응" 위협	1. 23.	
국방위 성명, "전면 대결전에 진입, 높은 수준의 핵실험 할 것" 위협	1. 24.	정부 성명, "北 핵실험 성명 대단히 유감"

북 측	일 자	남 측
조평통 성명,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완전 백지화, 전면무효화" 선포	1. 25.	
	2. 4.	한미 연합해상훈련(동해, ~2. 6.)
제3차 핵실험 실시(풍계리) 외무성 담화,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 조치" 위협	2. 12.	'NSC 긴급회의' 소집 정부 성명, '北 3차 핵실험 규탄"
	2. 14.	국방부, 순항미사일 동영상 공개 국회, 北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2. 19.	한미 연합대잠훈련(동해, ~2. 24.)
판문점대표부 대표,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KR/FE연습 비난 전화통지문 발송	2. 23.	
	2. 25.	박근혜 대통령 취임
최고사령부 성명,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전면중지" 발표	3. 5.	
	3. 6.	군, 北 군사위협에 대한 입장 발표 * "北 도발 시 지휘세력까지 응징"
외무성 성명, "핵 선제타격 권리 행사" 위협	3. 7.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094호 채택 * "우라늄 농축 포함 핵실험·추가도발 중단,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 폐기 결정 재확인" 등
조평통 성명, "南北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 전면 폐기" 위협	3. 8.	정부 성명, "긴장 조성 행위 매우 유감"
외무성 성명, "핵보유국, 위성 발사국 지위 영구화" 주장	3. 9.	
	3. 11.	KR/FE 연습 시작(~4. 30.)
조평통 성명, "후과의 책임은 미와 남" 주장	3. 12.	
인민무력부 담화, "무자비한 보복행동뿐" 위협	3. 13.	
외무성 대변인 문답, "정전협정, 어느 일방이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 백지화" 주장	3. 14.	
김정은, 초정밀 무인타격기 훈련 지도	3. 20.	민간 전산망 마비 (KBS, MBC, YTN, 신한은행, 농협, 제주은행)
최고사령부 성명,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 외무성 성명, "조선반도에 핵전쟁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유엔 안보리에 공개 통고"	3. 26.	국가정보통신망·YTN 홈페이지 마비, 데일리NK·자유북한방송 접속 장애 발생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전통문, "남북 군통신선 단절" 통보	3. 27.	정부 성명, "北, 군 통신선 차단 철회 요구"
김정은, 전략로케트군 작전회의 긴급소집 * "화력타격계획 최종 비준"	3. 29.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위협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담화, "우리 존엄 훼손하면 개성공업지구 차단·폐쇄될 것" 위협	3. 30.	국방부장관, "北 도발 시 미 본토 전력까지 동원해 제압"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 채택	3. 3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회의,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 채택	4. 1.	대통령, "北 도발 시 정치적 고려 없이 강력 대응" * 국방부 업무 보고 시

북 측	일 자	남 측
원자력총국 대변인, "영변 핵시설 재가동" 주장	4. 2.	대통령, 외교안보장관회의 긴급 소집 * "강력한 외교적·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출경 차단	4. 3.	국방부장관, "개성공단과 관련, 군사조치와 더불어 만반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
총참모부 담화, "첨단 핵타격 작전, 최종 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통고" 위협	4. 4.	
김양건, "개성공업지구 관련 중대조치" 발표 ① 우리(북) 종업원들 전부 철수 ② 개성공업지구사업 잠정중단 및 존폐여부 검토	4. 8.	정부 성명, "北, 개성공단 잠정중단, 근로자 전원 철수 발표 유감, 北 책임져야"
아·태평화위원회 담화, "남조선 내 외국기관·기업·외국인 사전대피·소개대책 세워야" 위협	4. 9.	
	4. 11.	통일부장관 성명, "北, 도발 위협 매우 유감,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 통해 해결"
총참모부 대변인 문답, "3·20 해킹공격 부인, 반미 대결소동" 비난	4. 12.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장, 우리 측 보수단체 퍼포먼스 관련, "대화 원하면 모든 적대행위 사죄해야"	4. 16.	
조평통 담화, "적대행위 지속 시 남북대화 없어" 국방위 정책국 성명, "도발행위 중지, 전면 사죄"	4. 18.	제37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 * 한미 합참의장 "北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
	4. 25.	정부, 개성공단 관련 남북실무회담 제의 *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조치 취할 것"
국방위 정책국 담화, "南 태도 여하에 따라 먼저 최종적·결정적 중대조치를 취하게 될 것" 위협	4. 26.	정부 성명,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귀환 결정"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문답, "개성공업지구 완전 폐쇄 책임은 남측이 지게 될 것" 위협	4. 27.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먼저 적대행위 중지해야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주장	5. 5.	
	5. 6.	한미 연합대잠훈련(서해, ~5. 10.)
서남전선사령부 보도, 한·미 연합훈련 관련 "서해 불바다" 위협	5. 7.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 * "北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둘 것"
	5. 13.	한미 연합대잠훈련(동해, ~5. 14.)
동해로 신형 방사포 6발 발사 조평통 서기국 보도, "로케트 발사훈련은 정상적 군사훈련" 주장	5. 18. ~ 5. 20.	
최룡해 특사 중국 방문, "대화와 협상 재개 희망"	5. 22.	
국방위 정책국 담화, 대통령 첫 실명 거론 비난	5. 25.	
	5. 27.	정부 성명, "박 대통령 비난 유감, 즉각 중단 요구"
	6. 7.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
	6. 9.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 "남북당국회담(서울, 6. 12.~13.) 개최 합의" 등 발표문 채택

북 측	일 자	남 측
'남북당국회담 대표단 파견 보류' 통보 * 남측 수석대표의 급(級)에 대해 문제 제기	6. 11.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 기자회견, "유엔사 해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주장	6. 21.	
	6. 25.	청와대·국무조정실 등 정부기관, 정당, 언론사 등 해킹 발생
'금강산 관광 재개·이산가족 상봉 회담' 제의	7. 10.	정부, 이산가족 상봉 회담 수용 *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은 보류
'이산가족·금강산관광 회담 모두 보류' 통보 * "개성공단 문제해결에 집중" 구실	7. 11.	
	7. 16.	정부, "6·25 사이버 공격 북한 소행" 발표
개성공단 실무회담 북 대표, 기자실 난입, "개성공단 파탄나면 군 주둔지 복원할 것" 위협	7. 25.	통일부 성명, "개성공단에 북 진정성 안 보이면 중대 결심"
김정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 참석	7. 27.	대통령, "北 핵개발 포기" 촉구 * "DMZ 세계평화공원은 평화·통일의 출발점"
	8. 10.	유엔사 군정위, UFG연습 북측에 통보
	8. 14.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8. 15.	대통령,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및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제안
	8. 19.	UFG연습 시작(~8. 30.)
조평통 담화, UFG연습 비난	8. 20.	
	8. 23.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9. 25.~30. 이산가족 상봉" 합의
국방위 정책국 담화, UFG연습 비난	8. 29.	
	9. 5.	개성공단 3통 분과위 개최(개성공단) * '서해 군 통신선 재개' 합의
	9. 6.	서해 군 통신선 재개통
	9. 13.	개성공단 3통 분과위 제2차 회의(개성공단)
	9. 16.	개성공단 재가동
	10. 2.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서울) * '맞춤형 억제전략' 승인 등 13개항 공동성명 발표
국방위 정책국 성명, 대통령 실명 비난 *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10. 4.	
조평통 담화, "한미동맹, 맞춤형 억제전략" 비난	10. 7.	
총참모부 담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비난	10. 8.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남해, ~10. 10.)
외무성 담화, "핵 억제력 강화" 위협	10. 23.	
	11. 29.	개성공단 3통 분과위 3차 회의 *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 협력 합의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 일체 칭호 박탈, 출당, 제명	12. 8.	
장성택, 국가전복음모행위로 사형 집행	12. 12.	

북 측	일 자	남 측
	12. 17.	전군 주요지휘관 긴급회의 * "北 도발하면 가차 없이 응징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
조평통 서기국 공개질문장, "신뢰인가 대결인가 선택해야"	12. 25.	
김정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 표명	2014. 1. 1.	
	1. 6.	정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 제의 * 1. 10. 판문점 개최
조평통, 적십자 실무회담 거부	1. 9.	
조평통 담화, KE/FE연습 비난	1. 15.	
국방위,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 발표 * 상호 비방중상 중지,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금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조치 제안	1. 16.	정부 입장, "이산가족 상봉행사 성사로 남북관계 첫 단추를 채워야"
국방위, '남조선 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제의 * "설 지난 후 남측이 편리한 시기에 정하면 될 것"	1. 24.	
남북 고위급 접촉 제의	2. 8.	
	2. 9.	유엔사, KR/FE 훈련계획 북측에 통보
	2. 12.	남북 고위급 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2. 14.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 발표 *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상호 비방중상 중단 등
	2. 20.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금강산, ~2. 25.)
동해로 신형 방사포 4발 발사	2. 21.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2. 24.	KR/FE 연습 시작(~4. 18.)
동해로 SCUD 계열 미사일(추정) 2발 발사	2. 27.	
동해로 SCUD 계열 미사일(추정) 2발 발사	3. 3.	
동해로 신형 방사포 7발 발사	3. 4.	
전략군 담화,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로켓트 발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 주장	3. 5.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김정은, 333선거구에서 선출	3. 9.	
동해로 Frog 로켓 25발 발사	3. 16.	
동해로 Frog 로켓 30발 발사	3. 22.	
동해로 Frog 로켓 16발 발사	3. 23.	
	3. 24.	파주에서 추락한 소형무인기 발견
동해로 노동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국방위 검열단 비망록, 천안함 폭침 부인	3. 26.	한·미·일 정상회담(헤이그 핵안보 정상회의)
외무성 대변인 문답, "도발에 맞서 전쟁 억제력 더욱 강화할 것" 위협	3. 28.	대통령, '드레스덴 구상' 발표 유엔 안보리, '北 미사일 발사 규탄' 의장 구두성명
외무성 성명,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위협	3. 30.	

북 측	일 자	남 측
서해 해상 사격훈련 계획 통보 및 사격 * 일부 포탄 NLL 이남에 탄착	3. 31.	군, 대응사격 백령도에서 추락한 소형무인기 발견
유엔주재 차석대사,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위협	4. 4.	군,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발표
	4. 6.	삼척에서 추락한 소형무인기 발견
국방과학원 성명, 南 500㎞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비난	4. 7.	무인기 관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재추대	4. 9.	
국방위 정책국 담화, 南 500㎞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비난	4. 11.	무인기 추락 관련 합동조사 중간발표 * 北 소행으로 확실시되는 정황 근거 다수 식별
국방위 대변인 담화, '드레스덴 선언' 비난	4. 12.	
국방위 검열단 진상공개장, "무인기 사건의 北 소행설은 천안함 사건의 복사판"	4. 14.	
조평통, 공개질문장 발표 *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000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4. 23.	
서해 해상 사격훈련 계획 통보 및 사격 외무성 담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는 시효가 없다" 위협	4. 29.	
유엔주재 차석대사, "핵실험 연례행사" 위협	5. 8.	국방부, "소형무인기 北 소행" 발표
	5. 9.	합참 성명, "北 소형무인기 도발행위" 경고
국방위 검열단 담화, 무인기 北 소행설 부인	5. 11.	
판문점대표부 담화, 무인기 관련 美 비호 비난	5. 12.	국방부 대변인,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 비난
국방위 중대보도 및 조평통 대변인 성명, 국방부 대변인 발언 비난	5. 13.	
경비정·단속정 서해 NLL 침범	5. 20.	군,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 실시
서남전선사령부 공개보도, 우리 측 경고사격 관련 보복 위협	5. 21.	염수정 추기경 개성공단 방문
서해상 우리 측 함정에 포격도발	5. 22.	장성급군사회담 대표 명의 경고 전통문 발송
서남전선사령부 보도, 포격도발 부인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공식 발표	5. 23.	대통령, 외교안보장관회의 소집 국방부, 北 포격도발 비난성명 발표
조평통 대변인 담화, 김관진 국방부장관 비난	5. 29.	
동해로 신형 방사포 3발 발사	6. 26.	
동해로 SCUD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6. 29.	
국방위 특별제안, "남북 간 모든 합의 이행, 비방중상 중지,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6. 30.	
동해로 신형 방사포 2발 발사	7. 2.	
	7. 3.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7. 4.)
공화국 정부 성명 발표 * 북침전쟁연습 전면 금지, 남북 간 합의 존중·이행 등	7. 7.	
동해로 SCUD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7. 9.	
동해로 SCUD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7. 13.	
동해로 방사포·해안포 150여 발 발사 인천아시안게임 실무접촉 7. 17일 개최 동의	7. 14.	국방부 성명, "NLL 이남으로 사격할 경우 가차 없이 응징"

북 측	일 자	남 측
	7. 16.	한미 연합연습(~7. 21.)
	7. 17.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관련 남북 실무접촉 유엔 안보리,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외무성 성명,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비난	7. 19.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미사일 발사는 자주권' 강변	7. 21.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관계 개선 촉구	7. 23.	
동해로 SCUD 계열 미사일 1발 발사	7. 26.	
동해로 신형 방사포 4발 발사	7. 30.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UFG 강행 시 청와대, 백악관 타격목표 될 것" 위협	7. 31.	
	8. 7.	제1차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8. 11.	정부,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제의 * 8. 19.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개최
어선 1척 서해 NLL 침범	8. 12.	군,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 실시
조평통 성명, 대북정책 전환 촉구 동해로 신형 단거리미사일 5발 발사	8. 14.	
	8. 15.	대통령, 광복절 경축식 축사 * 환경, 민생, 문화 분야 교류 제안
총참모부 성명, UFG연습 비난	8. 17.	합참 성명, "심각한 유감" 표명
외무성 담화, UFG연습 비난	8. 18.	UFG연습 시작(~8. 28.)
국방위 정책국 담화, UFG연습 비난	8. 20.	
조평통 대변인 담화, UFG연습 비난 * "북침전쟁연습이 중지되지 않는 한 북남 사이의 그 어떤 대화나 관계 개선 노력도 무의미"	8. 29.	
동해로 신형 단거리미사일 1발 발사	9. 1.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 주한미군 철수 주장	9. 5.	
동해로 신형 단거리미사일 3발 발사	9. 6.	
조평통 대변인 담화, 주한미군 철수 주장	9. 7.	
고위급접촉 대변인 담화, 대북 전단 살포 비난	9. 13.	
	9. 15.	백령도 인근에서 소형 무인기 동체 발견
단속정 1척 NLL 침범	9. 19.	인천아시안게임 개막(~10. 4.) 군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 실시
조평통 대변인 담화, 대북 전단 살포 비난	9. 22.	
	9. 24.	백령도 인근에서 발견(9. 15.)된 소형 무인기 북한 무인기로 확인 대통령,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북한 핵·인권문제 제기
조평통 성명, 박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관련 비난	9. 26.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 박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관련 비난	9. 27.	

북 측	일 자	남 측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 연방제 통일방안 주장	10. 1.	
조평통 성명, 10·4선언 이행 촉구	10. 2.	
고위급대표단,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김양건 당 비서 등	10. 4.	고위당국자-北 고위급대표단 오찬회담 * 제2차 고위급접촉 10월 말~11월 초 개최 합의
경비정 1척 NLL 침범, 대응사격 도발	10. 7.	경고통신 후 경고사격, 대응사격 실시
연천지역 민간단체 전단 살포에 사격 도발 * 우리 지역에 北 총탄 일부 낙탄	10. 10.	경고방송 및 대응사격 실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 경고 전통문 발송
고위급접촉 대변인 담화, 대북 전단 살포 비난	10. 12.	
	10. 13.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대통령, "5·24조치 등은 남북이 만나서 대화로 풀어야"
노동신문, 40일 만에 김정은 공개보도 * 9. 4. 모란봉악단 공연관람 보도 이후 40일간 미보도	10. 14.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 서해상 충돌 방지, 전단 살포 문제 제기	10. 15.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 NLL 존중·준수, 체제 특성상 당국이 민간단체·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
조중통 공개보도,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내용 왜곡 공개	10. 16.	정부 성명, "왜곡 공개 유감 표명, 제2차 고위급접촉 합의대로 개최 기대"
철원 DMZ에서 군사분계선(MDL) 접근	10. 18.	경고방송 후 경고사격 실시
파주 DMZ에서 군사분계선(MDL) 접근, 대응사격 도발	10. 19.	경고방송 후 경고사격, 대응사격 실시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전통문 발송 * DMZ 내 정당한 순찰활동 강변, 보복 위협	10. 20.	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 전통문 발송 * 北 책임 전가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
고위급접촉 대변인 성명, "남측이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면 2차 고위급접촉 못할 이유가 없다"	10. 22.	
	10. 24.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워싱턴)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10. 25.	민간보수단체, 임진각에서 풍선 날리기 * 주민·시민단체 저지로 무산, 야간에 김포에서 풍선 날리기
국방위 서기실 명의 전통문, 전단 살포 비난 * "일정에 오른 북남고위급접촉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10. 26.	
	10. 27.	청와대 국가안보실 명의 전통문 발송 * 10. 30. 고위급접촉 수용 촉구
국방위 서기실 명의 전통문 발송 * 고위급접촉과 전단 살포 중지 양자택일 강요	10. 29.	통일부 대변인 논평,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하면서 대화하지 않을 것"
조평통 성명, 고위급접촉 거부 * "최고존엄을 훼손하는 삐라살포를 중단하지 않는 한 북남대화나 북남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	11. 1.	
파주 DMZ에서 군사분계선(MDL) 접근	11. 10.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호국훈련 시작(~11. 21.)

북 측	일 자	남 측
전선사령부 보도, “전 전선에서 군사적 도발 행위 지속 시 참혹한 피의 대가” 위협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반북 대결소동 지속되는 한, 대화·접촉 바라지 말아야”	11. 15.	
최룡해, 러시아 방문(~11. 24.) * 푸틴 대통령 면담, 김정은 친서 전달(11. 19.)	11. 17.	
	11. 18.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 북한 최고위층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
외무성 대변인 성명,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비난 * “새로운 핵실험을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전쟁억제력 무제한 강화할 것”	11. 20.	외교부 대변인 논평,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직면” 경고
서남전선군사령부 보도,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당한 패전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11. 21.	
국방위 성명,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비난 *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하게 될 것”	11. 23.	

일반부록 8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연대별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

구 분	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3,040	405	1,340	409	228	231	292	10	22	26	32	45
침 투	1,968	386	1,011	313	167	63	16	0	4	5	3	0
국지도발	1,072	19	329	96	61	168	276	10	18	21	29	45

* 2014년은 11월 30일까지

침투 및 국지도발 일지(2012. 11. 4. ~ 2014. 11. 30.)

일 자	주요 내용
2012. 12. 11.	울릉 북방 38마일 지점 어선 1척 기관 고장으로 NLL 27마일 침범
12. 12.	평북 철산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미사일 1발 발사
12. 13.	울릉 동북방 48마일 지점 어선(유인) 1척 기관 고장으로 NLL 23마일 침범 울릉 동북방 48마일 지점 어선(무인) 1척 기관 고장으로 NLL 23마일 침범
12. 26.	거진 동방 60마일 지점 어선 1척 기관 고장, 유류 소진으로 NLL 7마일 침범
12. 30.	울릉 북방 49마일 지점 어선 1척 기관 고장으로 NLL 13마일 침범
비공개	탈북자 가장 간첩 1명 검거(비공개)
2013. 1. 2.	북한 상선 1척, 연평도 서방 14.5마일 지점에서 NLL 0.2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1. 13.	북한 상선 1척, 연평도 서북방 6.3마일 지점에서 NLL 0.4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2. 12.	함북 길주군 풍계리 서쪽 갱도에서 핵실험 1회 * 2006. 10. 9. / 2009. 5. 25. 1·2차 이후 3차 핵실험
2. 25.	북한 상선 1척, 연평도 서방 7마일 지점에서 NLL 0.2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3. 4.	기검거된 간첩 000의 소재 파악 임무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北 정찰총국 소속 여간첩 000, 간첩 혐의로 구속 * 국정원, 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 중 검거
4. 5.	북한 어선 1척, 소청도 동북방 10.4마일 지점에서 NLL 0.3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5. 25.	북한 상선 1척, 연평도 서방 9.8마일 지점에서 NLL 0.3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5. 26.	북한 고속단속정 1척, 연평도 동북방 2.6마일 지점에서 NLL 1.1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5. 31.	북한 상선 1척, 연평도 서방 7.5마일 지점에서 NLL 0.1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일 자	주요 내용
6. 1.	북한 고속단속정 1척, 연평도 서방 6.9마일 지점에서 NLL 0.3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6. 2.	북한 어선 2척, 연평도 서방 8마일 지점에서 NLL 0.1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6. 9.	북한 고속단속정 1척, 연평도 서방 5.7마일 지점에서 NLL 1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6. 9.	북한 경비정 1척, 연평도 서방 7.7마일 지점에서 NLL 0.1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6. 25.	탈북자 000의 국내 동향 파악 및 국정원 요원 중국 유인 임무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北 보위사령부 소속 여간첩 000 등 7명, 간첩 혐의로 구속 * 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
6. 25.	북한 고속단속정 1척, 연평도 동북방 3.9마일 지점에서 NLL 1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6. 29.	북한 어선 1척, 백령도 동북방 5.9마일 지점에서 NLL 1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7. 9.	북한 상선 1척, 백령도 서방 30.7마일 지점에서 NLL 8마일 침범 * 경고통신, 대청도 서방 퇴거 조치
7. 15.	중국 내 탈북자 가족들을 유인, 강제 북송시키는 임무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보위부 소속 000, 간첩 혐의로 구속 * 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
7. 26.	북한 어선 1척, 연평도 서남방 20.4마일 지점에서 NLL 5.9마일 침범 * 경고통신 / 사격, 북상 퇴거 조치
7. 26.	북한 경비정 2척, 연평도 서방 6마일 지점에서 NLL 0.5마일 침범 - 상기 어선 단속 차 NLL 침범 판단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8. 1.	북한 어선 1척, 동해 제진 동북방 MDL-X 0.4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8. 3.	북한 고속단속정 1척, 연평도 서방 7.6마일 지점에서 NLL 0.2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8. 16.	북한 경비정 1척, 소청도 북방 14.4마일 지점에서 NLL 1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9. 8.	북한 고속단속정 1척, 연평도 서방 10.5마일 지점에서 NLL 0.3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9. 27.	북한 어선 1척, 백령도 동방 11마일 지점에서 NLL 0.2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10. 18.	북한 어선 1척, 연평도 서방 5마일 지점에서 NLL 0.2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10. 22.	북한 상선 1척, 백령도 서방 39마일 지점에서 NLL 11.2마일 침범 * 경고통신, 백령도 서방 퇴거 조치
10. 31.	북한 상선 1척, 백령도 서방 37마일 지점에서 NLL 3.9마일 침범 * 경고통신, 백령도 서방 퇴거 조치
12. 7.	북한 상선 1척, 백령도 서방 39마일 지점에서 NLL 2.4마일 침범 * 경고통신, 백령도 서방 퇴거 조치

일 자	주요 내용
12. 19.	북한 상선 1척, 백령도 서방 40마일 지점에서 NLL 0.1마일 침범 * 경고통신, 백령도 서방 퇴거 조치
12. 30.	북한 상선 1척, 백령도 서북방 1.6마일 지점에서 NLL 2.5마일 침범 * 경고통신, 대청도 서방 퇴거 조치
2014. 2. 24.	북한 경비정 1척, 연평도 서북방 13.4마일 지점에서 NLL 2.2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2. 27.	강원 송전리 일대에서 동해안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3. 3.	동해 법동 / 호도반도에서 동해안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3. 6.	북한 상선 1척, 백령도 서북방 33.7마일 지점에서 NLL 1.7마일 침범 * 경고통신, 퇴거 조치
3. 24.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에서 청와대 등을 사진 촬영 후 북상하던 북한 소형무인기 1대 추락 * 북한 소형무인기에 의한 최초 영공 침범
3. 25.	북한 고속단속정 1척, 연평도 서남방 15마일 지점에서 NLL 0.3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3. 26.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안으로 노동 미사일(추정) 2발 발사 * 北 서부 지역에서 내륙 관통, 동부 지역으로 최초 발사
3. 27.	북한 어선 1척, 백령도 동방 3마일 지점에서 NLL 1마일 침범 * 경고통신 / 사격, 예인 후 귀순 불원의사 확인 / 해상 인계
3. 27.~28.	북한 경비정 3척 / 연안경비정 1척, 백령도 동북방 11마일 지점에서 NLL 최대 1.2마일 침범 - 상기 어선 송환간 NLL 침범 판단 * 경고통신 / 사격, 북상 퇴거 조치
3. 31.	서해 NLL 인근 해상사격구역 7개 선정, 해상 사격 - 총 500여 발 중 100여 발 NLL 이남 탄착 * 2010. 11. 23.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NLL 이남 최초 탄착
3. 31.	백령도 사곶해안 교회 인근 도로에서 백령도, 대·소청도 등을 사진 촬영 후 북상하던 북한 소형무인기 1대 추락
4. 6.	강원도 삼척시 청옥산에서 동해안 일대 군사시설을 사진 촬영 후 북상하다 추락한 북한 소형무인기 1대 사후 발견
4. 16.	북한 연안경비정 1척, 연평도 동방 7.1마일 지점에서 NLL 1.4마일 침범 * 경고통신 / 사격, 북상 퇴거 조치
4. 20.	북한 경비정 1척, 백령도 서북방 6.5마일 지점에서 NLL 0.1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4. 20.	북한 상선 1척, 백령도 서북방 33마일 지점에서 NLL 0.7마일 침범 * 경고통신, 퇴거 조치
4. 25.	북한 고속단속정 2척, 소청도 동방 18마일 지점에서 NLL 1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퇴거 조치
5. 20.	북한 단속정 1척, 연평도 서남방 12.4마일 지점에서 NLL 0.6마일 침범 * 경고방송, 북상 조치
5. 20.	북한 경비정 2척, 연평도 서남방 12.4마일 지점에서 최대 NLL 0.7마일 침범 * 경고통신 / 사격, 북상 조치
5. 22.	북한사격 포탄 2발, 연평도 서남방(NLL 이남 10㎞ 인근) 낙탄
6. 12.	강원 화천 DMZ 내 금성천 일대 북한 무장군인 MDL 침범 * 경고방송 / 사격, 북상 조치
6. 19.	경기 파주 DMZ 내 북한 무장군인 귀순자 유도간판 절취 후 북상 복귀

일 자	주요 내용
6. 21.	북한 어선 1척, 백령도 동방 5.7마일 지점에서 NLL 0.1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조치
6. 29.	강원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7. 1.	북한 어선 1척, 울릉도 북방 65마일 지점에서 NLL 2.4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조치
7. 2.	북한 어선 1척, 울릉도 서북방 68마일 지점에서 NLL 0.4마일 침범 * 경고통신 / 사격, 북상 조치
7. 9.	황남 평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7. 13.	개성 북방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7. 26.	서해 장산곶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
8. 12.	북한 어선 1척, 연평도 서방 11.4마일 지점에서 NLL 0.5마일 침범 * 경고통신 / 사격, 북상 조치
8. 25.	북한 어선 2척, 연평도 서방 10마일 지점에서 NLL 0.1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조치
8. 26.	북한 단속정 1척, 연평도 서북방 8.9마일 지점에서 NLL 0.3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조치
8. 30.	북한 상선 1척, 연평도 서방 41.5마일 지점에서 NLL 최대 1.5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조치
8. 31.	북한 어선 2척, 연평도 서방 9.5마일 지점에서 NLL 0.1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조치
9. 1.	북한 어선 2척, 연평도 서방 9.3마일 지점에서 NLL 0.05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조치
9. 15.	백령 서방 해저에서 어민에 의해 무인기 동체 발견 * 파주·삼척 북한 소형무인기와 동일 기종으로 확인
9. 18.	북한 상선 1척, 연평도 서북방에서 NLL 0.1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조치
9. 19.	북한 단속정 1척, 백령도 북방 7.6마일 지점에서 NLL 0.5마일 침범 * 경고통신 / 사격, 북상 조치
9. 20.	북한 어선 3척, 연평도 서북방 5.8마일 지점에서 NLL 300야드 침범 * 경고통신, 북상 조치
9. 25.	북한 어선 2척, 연평도 서방 4.8마일 지점에서 NLL 0.2마일 침범 * 경고통신, 북상 조치
10. 7.	북한 경비정 1척, 연평도 서방 8.5마일 지점에서 NLL 0.7마일 침범 * 경고통신 / 사격간 북한 경비정 대응사격, 북상 퇴거 조치
10. 10.	경기 연천 일대 민간인 풍선 부양간 풍선에 조준사격 * 우리 측 민간단체 풍선 날리기에 조준사격 최초 식별
10. 18.	강원 철원 DMZ 내 정찰활동 중 MDL 월선 * 경고방송 / 경고사격
10. 19.	경기 파주 DMZ 내 정찰활동 중 우리 측 경고사격에 北 GP에서 우리 측 GP로 2발 총격도발
11. 10.	경기 파주 DMZ 내 정찰활동 중 MDL 월선 * 경고방송 / 경고사격

연대별·유형별 침투 및 국지도발 세부 현황

구 분		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3,040**	**405**	**1,340**	**409**	**228**	**231**	**292**	**10**	**22**	**26**	**32**	**45**
침투도발	지 상	530	45	380	93	7	5	0	0	0	0	0	0
	강 안	230	44	138	37	7	4	0	0	0	0	0	0
	해 상	1,001	292	472	172	24	41	0	0	0	0	0	0
	해외를 통한 침투	153	0	0	0	126	13	14	0	0	0	0	0
	탈북자 가장 침투	15	0	0	0	1	0	2	0	4	5	3	0
	월북군인 간첩 남파	14	2	12	0	0	0	0	0	0	0	0	0
	납북어부 간첩 남파	25	3	9	11	2	0	0	0	0	0	0	0
	소 계	**1,968**	**386**	**1,011**	**313**	**167**	**63**	**16**	**0**	**4**	**5**	**3**	**0**
국지도발	군사분계선 월선	29	0	4	3	1	8	10	0	0	0	0	4
	지상 총·포격 도발	94	0	8	18	35	17	12	2	0	0	0	2
	습격 및 납치(지상)	79	5	66	7	0	1	0	0	0	0	0	0
	판문점지역 미군에 대한 도발	300	2	222	23	8	25	20	0	0	0	0	0
	북한 경비(단속) 정 NLL 침범	273	0	0	22	11	101	110	2	5	2	9	11
	북한 어(상)선 NLL 침범	186	0	0	3	0	3	115	2	12	17	19	15
	포격 및 소규모 해전	40	1	18	2	0	11	2	3	1	0	0	2
	습격 및 납치 (해상)	8	1	4	1	1	0	0	1	0	0	0	0
	영공침범	22	2	1	11	2	0	2	0	0	0	0	4
	공중공격	3	1	1	0	0	0	1	0	0	0	0	0
	미사일, 대공포 사격 및 격추	15	5	4	4	1	1	0	0	0	0	0	0
	공중납치 및 폭파	5	2	1	1	1	0	0	0	0	0	0	0
	기 타	17	0	0	1	1	1	4	0	0	2	1	7
	소 계	**1,072**	**19**	**329**	**96**	**61**	**168**	**276**	**10**	**18**	**21**	**29**	**45**

일반부록 9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한·미 연합연습

연습명	형 태	목 적	내 용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군사지휘소 및 정부연습	• 현 연합방위체제하 전구작전 지휘 및 전쟁수행 절차 연습 •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대비 한국 합참·주한미군사령부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능력 배양 •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충무계획 및 전쟁수행예규 수행절차 숙달	• 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 절차 연습 • 작전계획 시행절차 연습 • 주요지휘관세미나 • 군사협조기구 운영 연습 등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KR/FE)	지휘소 연습 및 야외기동훈련	• 현재의 연합방위태세 점검 및 전쟁수행절차 숙달 • 한·미 연합작전 및 후방 지역 방호작전 능력 배양	• 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절차 연습 • 작전계획 시행절차 연습 • 연합작전지역 내 수용, 대기, 전방 이동 및 통합절차 숙달 • 한·미 연합실기동훈련 등

한국군 합동연습 및 훈련

연습명	형 태	목 적	내 용
태극연습	전구급 지휘소연습	• 합참의 전구작전 수행능력 구비	• 다양한 위협 대비 작전수행절차 연습 •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작전수행 체계 구축 및 능력 향상
호국훈련	전구 및 작전사급 대부대 합동훈련	• 합동성 중심의 작전수행 능력 제고	• 전·평시 작전계획하에 실시하는 지·해·공 합동훈련 • 작전사별 합동성이 요구되는 핵심훈련 숙달
후방지역 종합훈련 (화랑훈련)	권역별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	• 전·평시 작계시행 절차 숙달 •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 •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인	• 침투·국지도발 대비작전 • 전시전환 • 전면전 대비작전

기타 주요 연합훈련

훈련명	시 기	참가국	훈련 내용
공구사전투준비태세 연습 (PenORE)	연 2회	한국, 미국	• 연합 공격편대군 훈련 • 긴급항공차단 • 근접항공지원 • 대화력전 등
공중급유훈련	연 2~3회	한국, 미국	• 급유가능기종 조종사 자격 획득 및 유지 훈련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 (Pacific Reach)	3년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 잠수함 승조원 탈출 및 구조훈련 등
쌍매훈련 (Buddy Wing)	연 8회	한국, 미국	• 공중전투 훈련 • 긴급항공차단 훈련 등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훈련 (Max Thunder)	연 2회	한국, 미국	• 방어제공 훈련 • 연합 공격편대군 훈련 • 긴급항공차단/대화력전 훈련 • 공수, 탐색구조훈련
연합 대잠전훈련 (ASWEX)	연 2회	한국, 미국	• 잠수함 추적, 공격, 어뢰발사(모의) • 대잠자유공방전 등
연합대테러훈련 (Vector Balance Knife)	연 1회	한국, 미국	• 레펠/등반훈련 • 대테러/저격수 사격 • 통로개척, 내부소탕 • 유형별 작전(건물, 항공기) 등
연합 특수작전훈련 (Balance Knife)	연 3회	한국, 미국	• 한미 비정규전 작전수행능력 배양 • 비정규전 교리 발전 등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	연 1회	한국, 미국	• 탑재, 여건조성작전 • 결정적 행동(해상·공중돌격, 육상작전) • 연합지휘소 운용 등
코브라골드훈련 (Cobra Gold)	연 1회	한국, 미국, 태국	• 연합상륙훈련, 해상기동훈련 • 특수전 훈련 • 인도적 민사활동 • 인도적 작전 지휘소 연습 등
태평양 공군 연합전술훈련 (Red Flag-Alaska)	연 1회(전투기), 격년제(수송기)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싱가포르, 태국, 프랑스 등	• 방어제공 훈련 • 연합 공격편대군 훈련 • 저고도 침투 및 화물투하훈련 등
한·미 잠수함전훈련 (Silent Shark)	격년제	한국, 미국	• 잠수함대 잠수함 훈련 • 공격기뢰 부설훈련 등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 (SAREX)	격년제	한국, 일본	• 조난 항공기/선박 수색 및 구조훈련 등
환태평양훈련 (RIMPAC)	격년제	한국, 미국, 호주, 칠레, 영국, 일본, 캐나다, 페루 등	• 해상공방전 • 해상교통로 보호 • 해양차단 및 항공강습 • 함포 사격훈련 • 유도탄 및 어뢰발사 • 상륙훈련/특수전훈련 등

일반부록 10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지난 60년 동안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점차 전세계의 안정, 안보 및 번영의 초석이 되어왔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3년 5월 7일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0년간의 양국 간 파트너십과 공동번영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동선언을 제시한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미래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해 나갈 준비가 잘 되어있음을 확인한다.

한국전쟁 속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 동맹은, 안보 협력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왔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 우정 그리고 공동의 번영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지켜온 한반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확장 억지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올해는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기념비가 되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의 파트너십이 긍정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성장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대 등 한·미 FTA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고, 에너지 부문을 포함, 양국 간 협력 및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잠재력이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미 양국은 한·미 FTA가 양국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2009년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이행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에게 더 나은 그리고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고, 「공동비전」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한편,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에 기초하여,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반복되는 도발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함께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6자회담 참가국들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로부터 양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과 함께,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함께 하고 있기에, 북한이 그들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와 개선 노력을 기울이며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적 그리고 범세계적 안보 및 경제발전과 불가분으로 연계되어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

을 기반으로, 우리는 공동 도전에 대응하고, 동북아에서의 평화·협력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미 동맹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응노력과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 인권,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협력, 테러리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 안전, 비확산, 사이버안보, 해적퇴치 등에 있어서의 협력증진 노력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60년간의 파트너십과 공동 번영을 통해 우리는 한·미 동맹의 힘이 양국 국민들 간 긴밀한 관계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내 대규모 한인 사회는 한·미 양국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 많은 힘과 활력을 불어넣는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계, 시민단체, 학계, 기타 기관들 간 협력을 포함, 양국 사회 간 보다 긴밀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과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한다.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서,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를 위한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제45차 SCM 공동성명

2013년 10월 2일, 서울

김관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을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하고, 지난 60년의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25전쟁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동맹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로 기능하였다. 오늘날 공고한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은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

1.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3년 10월 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김관진 장관과 헤이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3년 9월 30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정승조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대장은 제38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금년 5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양 장관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등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향후에도 KIDD를 중심으로 양국 간 안보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2014년까지 미래 한미동맹의 국방비전에 대한 연구를 완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의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도발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핵실험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완수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와 2094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경수로 건설 및 영변에서의 핵 관련 활동을 포함한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적극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의 안보환경을 감안 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지속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김관진 장관은 금년 3월 미국 전략자산의 KR/FE 연습 참가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주한미군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과,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5.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군사적 계획이 잠재적인 위기상황 하에서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2013년 3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한·미가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완성시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동 계획이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동맹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핵·WMD 위협에 대한 억제방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국의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동 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주요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위해 동맹의 전략적 틀을 확립하고,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맹능력의 통합을 강화할 것이다. 양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 방어, 교란 및 파괴의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반도 방어에 대한 동맹의 억제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김관진 장관은 대한민국이 신뢰성과 상호운용성이 있는 대응능력을 지속 구축할 것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동맹 지휘·통제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3자 또는 다자 협력을 통한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포함하여, 상호 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동맹의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계기로 2013년 9월 6일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제시되었듯이, 양 장관은 8월 21일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하면서, 북한이 보유한 화학무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대한민국이 아프간 지방재건팀과 오쉬노부대 파견 및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아프

가니스탄 재건과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헤이글 장관은 아덴만에서의 해적퇴치 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남수단 재건지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헤이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보안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지난해 SCM 회의 시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관련약정(TOR)을 체결한 이래, 연합연습 강화, 정보공유 활성화 등 상호 관심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우주 상황인식 증진 등에 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3년 7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 2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에 주목하면서, 양 장관은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2013년 9월 5일 관련약정 체결을 환영하였다.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태세를 증진하기 위해 정보 공유, 사이버 정책, 전략, 교리, 인력, 연습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10. 양 장관은 제임스 서먼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1. 양 장관은 연합전투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략동맹 2015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 향후 수년 동안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공동 인식하였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능력을 유지·제고시켜야 하며, 한미동맹의 국방 우선 과제와 미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양 장관은 심각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연례 SCM/ MCM을 통해 「전략동맹 2015」의 이행을 평가하는 맥락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기로 하였고, 이에 관해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 데 있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또한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측의 지속능력을 제공한다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김관진 장관은 대한민국이 연합방위 주도권을 수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발전 및 확보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동맹의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2.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사업상의 제반 도전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한 기지 반환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동의하였다.

13. 헤이글 장관은 김관진 장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과 미합중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5차 SCM과 제38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 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6차 SCM을 2014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46차 SCM 공동성명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

1.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대장과 대한민국 합참의장 최윤희 대장은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2013년 5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양 장관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등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양 장관은 앞으로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회의를 중심으로 보다 활발한 양자 안보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3.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의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도발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행위가 일련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서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북한의 2014. 3. 30.자 성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완수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와 2094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경수로 건설 및 5MW 원자로 재가동 등 영변에서의 핵 관련 활동을 포함한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적극 이행해나가는데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의 안보환경을 감안 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지속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 하였다. 양 장관은 완벽한 전투능력을 갖춘 미군 전

력의 한반도 순환배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을 현시하고, 한반도에서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헤이글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전시 한·미 연합사단을, 이를 위해 평시에는 연합 참모단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점에 주목하고, 연합사단이 전술적 수준에서 연합전투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은 심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까지 한강 이북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은 한국군의 동 전력증강계획이 완성 및 검증되면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2020년경까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증강을 완료하기로 약속하였다.

5.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군사적 계획이 잠재적인 위기상황 하에서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의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 TTX가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동맹의 이해를 제고하고 상황별 정치·군사적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달성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핵·화생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의 정립을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동맹의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통해 질병, 테러 등 다양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음을 강조하고, 이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양자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아덴만에서의 해적퇴치 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남수단 재건지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헤이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연합연습 강화, 정보공유 활성화 등 상호 관심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미 국방부 간 우주상황인식 서비스와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증가하는 우주 위험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태세를 증진하기 위해 정보공유, 사이버 정책, 전략, 교리, 인력, 연습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10. 양 장관은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1. 지속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접근 방식이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작권이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확인하였다. 양국 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에 적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SA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제47차 SCM까지 공동 발전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12.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유지하고 사업상에 제반 도전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한 기지 반환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동의하였다.

13.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14년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논의된 대로 한·미·일 정보공유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2014년부터 2018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최근 합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5. 한민구 장관은 헤이글 장관에게 미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6차 SCM과 제39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 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 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7차 SCM을 201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일반부록 13

주요 국제 군비통제 협약 및 기구

2014년 9월 기준

구 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현황	주요 내용
유엔 관련 기구	유엔 총회 제1위원회 (First Committee)	193개국 (1945. 10.)	한국 (1991. 9.) 북한 (1991. 9.)	• 유엔총회 6개 위원회 중 하나로 군축 및 국제안보 관련 의제 토의 • 매년 50~60여 개의 결의안 초안을 총회에 권고하며, 대부분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 •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
	유엔 군축위원회 (UNDC : UN Disarmament Commission)	193개국 (1952. 1.)	한국 (1991. 9.) 북한 (1991. 9.)	• 군축·비확산 주요 이슈 3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유엔총회에 보고서 제출 •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방향, 원칙 등을 도출해 내는 심의기구 •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
	군축회의 (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65개국 (1962. 3.)	한국 (1996. 6.) 북한 (1996. 6.)	•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다자 군축 협상기구 • 군축 관련 주요 다자조약의 대부분이 군축회의에서 교섭을 통해 탄생 • 유엔총회의 직속기구는 아니나 유엔 정규예산으로 운영되고, 독자적으로 의제 및 의사규칙 결정 • 매년 유엔총회에 정기보고서 제출
핵무기	핵확산금지조약 (NPT : 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	190개국 (1970. 3.)	한국 (1975. 4.) 북한 (1985. 12.) * 2003. 1. 탈퇴	•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국제원자력기구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62개국 (1957. 7.)	한국 (1957. 8.) 북한 (1974. 6.) * 1994. 6. 탈퇴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국제협력 수행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 (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182개국 (미발효)	한국 (1999. 9.)	•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지하, 수중, 대기, 우주 등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 핵실험 금지
미사일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약 (HCOC :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137개국 (2002. 11.)	한국 (2002. 11.)	•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자발적 성격의 국제 규범 (현재,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또는 획득할 우려가 있는 국가들의 탄도 미사일 개발계획 지원 금지
생물화학무기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71개국 (1975. 3.)	한국 (1987. 6.) 북한 (1987. 3.)	• 생물무기(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을 전면 금지

구 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현황	주요 내용
생물 화학 무기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190개국 (1997. 4.)	한국 (1997. 4.)	•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을 전면 금지 • 가입 후 10년 내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도록 규정 * 불가피한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190개국 (1997. 5.)	한국 (1997. 4.)	• 화학무기금지협약 의무 이행의 확인 및 사찰을 위한 집행기구
재 래 식 무 기	무기거래조약 (ATT : The Arms Trade Treaty)	122개국 (2013. 6.)	한국 (2013. 6.)	• 재래식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을 방지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보에 기여 •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규정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118개국 (1983. 12.)	한국 1,2의정서 (2001. 5.) 5의정서 (2008. 1.)	• 정식명칭 :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 제1의정서 : X-ray로 탐지가 불가능한 파편무기 사용 금지 – 제2의정서 : 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 제3의정서 : 화염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 – 제4의정서 : 실명 레이저무기 사용 금지 – 제5의정서 : 전쟁잔류폭발물 규제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UNRCA : United Nations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193개국 (1991. 12.)	한국 (1993. 3.)	• 재래식무기 수출입 실적 및 보유현황 등을 유엔에 등록 • 재래식무기 이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군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증진
다 자 수 출 통 제 체 제	쟁거위원회 (ZC : Zangger Committee)	36개국 (1974. 8.)	한국 (1995. 10.)	• 핵확산금지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핵물질, 장비의 수출 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출통제체제 • NPT 회원국만 가입 가능
	핵공급국그룹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48개국 (1978. 1.)	한국 (1996. 10.)	• 핵물질, 장비, 기술의 수출통제체제 • NPT 회원국이 아니라도 가입 가능 • NPT 회원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핵 비보유국에 대해 수출 통제 • 원자력 관련 이중용도 품목·기술 수출 통제
	호주그룹 (AG : Australia Group)	42개국 (1985. 4.)	한국 (1996. 10.)	• 화학·생물무기 관련 품목 및 기술 등이 우려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체제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34개국 (1987. 4.)	한국 (2001. 3.)	•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비행체, 그리고 관련 장비,기술의 수출·이전을 통제하는 체제
	바세나르체제 (WA : Wassenaar Arrangement)	41개국 (1996. 7.)	한국 (1996. 7.)	•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관한 수출통제체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s)	104개국 (2003. 6.)	한국 (2009. 5.)	•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관련 물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

일반부록 14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014년 9월 기준

구 분				현재 인원	지 역	최초 파병	교대 주기
유엔 평화유지 활동	부대 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317	티르	2007. 7.	8개월
		남수단 한빛부대		289	보르	2013. 3.	
	개인 단위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		7	스리나가	1994. 11.	1년
		라이베리아 임무단(UNMIL)		2	몬로비아	2003. 10.	
		남수단 임무단(UNMISS)		7	주바	2011. 7.	
		수단 다푸르 임무단(UNAMID)		2	다푸르	2009. 6.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4	나쿠라	2007. 1.	
		코트디부아르 임무단(UNOCI)		2	아비장	2009. 7.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4	라윤	2009. 7.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		2	포르토프랭스	2009. 11.	
	소 계			**636**			
다국적군 평화활동	부대 단위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301	소말리아해역	2009. 3.	6개월
	개인 단위	바레인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4	마나마	2008. 1.	1년
		지부티 연합합동기동부대 (CJTF-HOA)	협조장교	2	지부티	2009. 3.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2	플로리다	2001. 11.	
			참모	1			
	소 계			**310**			
국방협력	부대 단위	UAE 아크부대		150	알 아인	2011. 1.	8개월
		필리핀 아라우부대		297	타클로반	2013. 12.	6개월
	소 계			**447**			
총 계				**1,393**	**15개국**		

* 필리핀 아라우부대는 2014년 12월 22일부로 철수

파병부대별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레바논 동명부대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아프간 오쉬노부대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	남수단 한빛부대	필리핀 아라우부대
2007년	261	–	–	–	–	–
2008년	172	–	–	–	–	–
2009년	224	156	–	–	–	–
2010년	208	364	161	–	–	–
2011년	193	337	227	93	–	–
2012년	183	318	251	105	5	–
2013년	175	280	51	85	310	18
2014년	178	358	33	87	286	298
계	**1,594**	**1,813**	**723**	**370**	**601**	**316**

* 2007~2013년은 집행액, 2014년은 편성액 기준

일반부록 16

연도별 국방비 현황

연 도	국방비(억원)	GDP대비국방비(%)	정부재정대비 국방비(%)	국방비 증가율(%)
1980	2조 2,465	5.69	34.7	46.2
1981	2조 6,979	5.47	33.6	20.1
1982	3조 1,207	5.49	33.5	15.7
1983	3조 2,741	4.85	31.4	4.9
1984	3조 3,061	4.25	29.6	1.0
1985	3조 6,892	4.23	29.4	11.6
1986	4조 1,580	4.08	30.1	12.7
1987	4조 7,454	3.95	29.6	14.1
1988	5조 5,202	3.83	30.0	16.3
1989	6조 0,148	3.68	27.3	9.0
1990	6조 6,378	3.36	24.2	10.4
1991	7조 4,764	3.13	23.8	12.6
1992	8조 4,100	3.08	25.1	12.5
1993	9조 2,154	2.97	24.2	9.6
1994	10조 0,753	2.75	23.3	9.3
1995	11조 0,743	2.58	21.4	9.9
1996	12조 2,434	2.54	20.8	10.6
1997	13조 7,865	2.60	20.7	12.6
1998	13조 8,000	2.63	18.3	0.1
1999	13조 7,490	2.38	16.4	△0.4
2000	14조 4,774	2.28	16.3	5.3
2001	15조 3,884	2.24	15.5	6.3
2002	16조 3,640	2.15	14.9	6.3
2003	17조 5,148	2.16	14.8	7.0
2004	18조 9,412	2.16	15.8	8.1
2005	21조 1,026	2.29	15.6	11.4
2006	22조 5,129	2.33	15.3	6.7
2007	24조 4,972	2.35	15.7	8.8
2008	26조 6,490	2.41	14.8	8.8
2009	28조 9,803	2.52	14.2	8.7
2010	29조 5,627	2.34	14.7	2.0
2011	31조 4,031	2.36	15.0	6.2
2012	32조 9,576	2.39	14.8	5.0
2013	34조 4,970	2.42	14.3	4.7
2014	35조 7,056	2.38	14.4	3.5

* GDP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연도 변경(2005년→2010년)에 따른 수치임(「2012 국방백서」는 2005년 기준, 「2014 국방백서」는 2010년 기준)
* 추경예산 기준

일반부록 17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국제 방산협력협정(양해각서) 체결국 : 31개국

2014년 9월 기준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미국	1988. 6.	인도네시아	1995. 10.	베네수엘라	1999. 12.	이집트	2009. 12.
태국	1991. 4.	캐나다	1996. 5.	베트남	2001. 8.	에콰도르	2010. 1.
스페인	1992. 3.	독일	1997. 11.	호주	2001. 8.	우즈베키스탄	2010. 2.
프랑스	1992. 3.	러시아	1997. 11.	방글라데시	2004. 1.	페루	2010. 6.
영국	1993. 9.	루마니아	1997. 11.	인도	2005. 9.	노르웨이	2010. 9.
필리핀	1994. 5.	뉴질랜드	1998. 11.	파키스탄	2006. 5.	아랍에미리트	2010. 9.
말레이시아	1995. 7.	네덜란드	1999. 6.	우크라이나	2006. 12.	덴마크	2011. 5.
이스라엘	1995. 8.	터키	1999. 11.	콜롬비아	2008. 5.		

기타 방산협력 관련 협정 체결 현황

2014년 9월 기준

구분	국제기술협력협정 (10개국)	품질보증협정 (23개국)	가격정보제공협정 (4개국)
국가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러시아, 터키, 인도, 콜롬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필리핀, 독일, 이스라엘, 터키,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그리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스웨덴, 페루, 노르웨이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병사 봉급 변화 추이

단위 : 원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70년	900	800	700	600
1971년	1,030	920	800	690
1972년	1,200	1,050	900	800
1973년	동 결			
1974년	1,560	1,370	1,170	1,040
1975년	동 결			
1976년	2,260	1,990	1,700	1,510
1977년	2,890	2,540	2,170	1,930
1978년	3,460	3,050	2,600	2,320
1979년	3,800	3,300	2,900	2,600
1980년	3,900	3,400	3,000	2,700
1981년	동 결			
1982년	4,200	3,700	3,300	3,000
1983년	4,500	3,900	3,500	3,200
1984년	동 결			
1985년	4,600	4,000	3,600	3,300
1986년	4,900	4,300	3,900	3,500
1987년	5,100	4,500	4,000	3,600
1988년	7,500	6,500	6,000	5,500
1989년	8,300	7,000	6,500	6,000
1990년	9,400	8,200	7,300	6,600
1991년	10,000	9,000	8,000	7,200
1992년	10,900	9,800	8,700	7,800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93년	11,300	10,100	9,000	8,100
1994년	11,700	10,400	9,300	8,400
1995년	12,100	10,700	9,600	8,700
1996년	12,700	11,200	10,100	9,100
1997년	13,300	11,800	10,600	9,600
1998년	동 결			
1999년	동 결			
2000년	13,700	12,200	10,900	9,900
2001년	19,600	17,700	16,000	14,800
2002년	21,900	19,800	17,900	16,500
2003년	23,100	20,900	18,900	17,400
2004년	34,000	30,700	27,800	25,600
2005년	44,200	39,900	36,100	33,300
2006년	72,000	65,000	58,800	54,300
2007년	88,600	80,000	72,300	66,800
2008년	97,500	88,000	79,500	73,500
2009년	동 결			
2010년	동 결			
2011년	103,800	93,700	84,700	78,300
2012년	108,000	97,500	88,200	81,500
2013년	129,600	117,000	105,800	97,800
2014년	149,000	134,600	121,700	112,500

일반부록 19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연 도	복무기간(개월)			조정 사유
	육군·해병	해 군	공 군	
1952년 이전	전역제도 없음			6·25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 불가
1953년	36	36	36	6·25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1959년	33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2년	30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8년	36	39	39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1977년	33	39	39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
1979년	33	35	35	해·공군병 획득난 해소
1984년	30	35	35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90년	30	32	35	해군병 획득난 해소
1993년	26	30	30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1994년	26	28	30	해군병 획득난 해소
2003년	24	26	28	병역부담 완화
2004년	24	26	27	공군병 획득난 해소
2008년	24→18	26→20	27→21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단축을 추진하였으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3개월 단축하다가 중단 (2010. 12. 21.)
2011년	24→21	26→23	27→24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자원 부족 해소 *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

일반부록 20

대체복무 유형별 현황

복무 형태		복무 기간	기본자격	복무 분야	수요부서/ 복무기관	설치 근거
사회 복무 요원	사회서비스업무 - 사회복지 - 보건의료 - 교육문화 - 환경안전 - 행정업무지원	24 개월	보충역자원	사회복지 시설지원, 보건 환자 구호, 장애학생 학습지원, 환경 감시 등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병역법」
예술 체육 요원	예 술	34 개월	국제대회 2위 이상, 국내대회 1위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	예술 분야	문화체육 관광부	「병역법」
	체 육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체육 분야		
국제협력요원		30 개월	외교부장관 추천, 병무청장 선발	국제협력	외교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산업 기능 요원	현 역	34 개월	학력별 기술자격증 소지자	공업, 광업, 에너지, 건설, 수산, 해운, 농업, 수산업, 방위산업 분야	지정업체, 방위산업업체	「병역법」
			국제기능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후계 농·어업인			
	보충역	26 개월	학력, 기술자격 제한 없음			
전문 연구 요원	현 역	36 개월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 (보충역 학사이상)로 병역지정 연구기관 종사자	학문·기술연구	자연계 연구기관	「병역법」
	보충역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방위산업 연구기관	
					대학연구기관	
공중보건의사		36 개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농어촌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징병전담의사			의사, 치과의사	병무청 징병검사	병무청	「병역법」
국제협력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개발도상국가 의료 종사	외교부	「국제협력 요원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			변호사	법률구조업무	법무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가축 방역업무	농림축산 식품부	「공중방역 수의사에 관한 법률」

국방기구도

국방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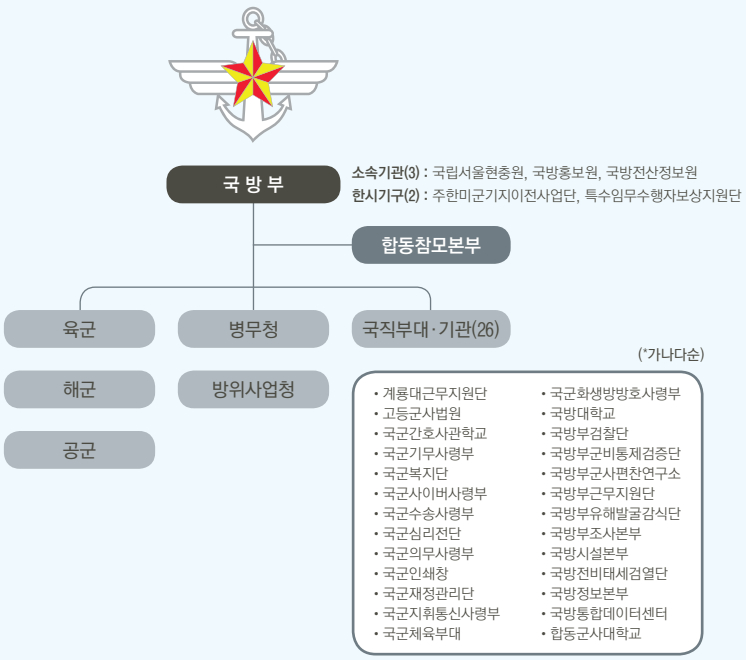

국방부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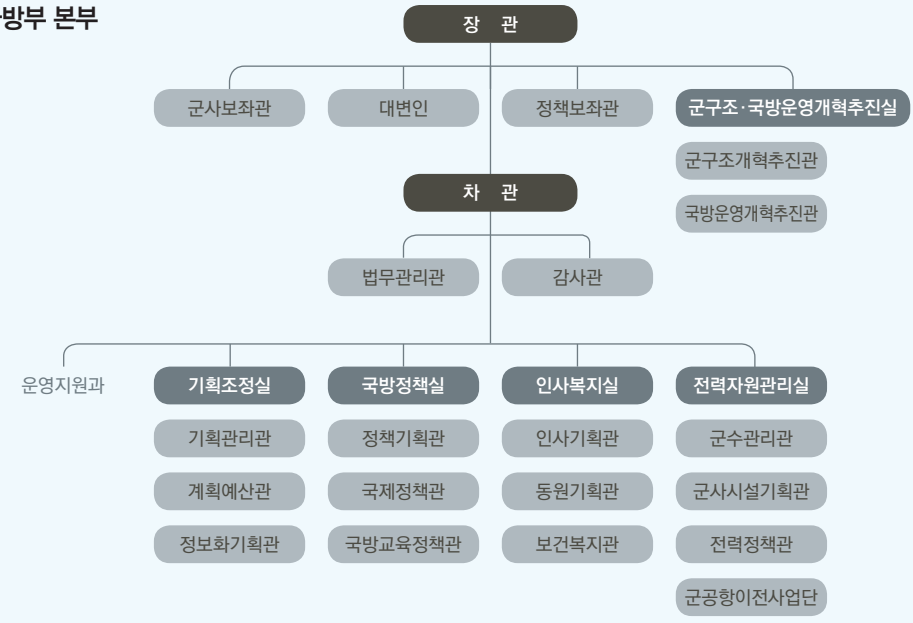

소속기관 및 한시기구의 임무 및 기능

구 분		임무 및 기능
소속기관	국립서울현충원	• 국립서울현충원 시설·묘역 및 산림의 관리 및 운영 • 현충의식·행사의 계획 및 집행 • 참배 안내 및 특수묘역 운영 •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립묘지 홍보
	국방홍보원	• 국방일보, 국방TV 및 국방FM 등을 통한 군 홍보 및 장병교육 • 국방뉴스, 시사보도물 제작 및 사이버 홍보 • 국방관련 행사 사진촬영 및 기록 관리 등
	국방전산정보원	•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 • 국방부 및 소속기관의 통신망, 전산장비 등의 획득·운영 • 신 정보기술의 연구, 습득, 전파 및 관리 •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시기구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의 지원 •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업무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준비 및 지원 •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신청인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조사 •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 소송 및 민원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임무 및 기능

구 분		임무 및 기능
공공기관	한국국방연구원	•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 국방인력·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전쟁기념사업회	•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립, 운영 • 전쟁 및 군사 유물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 전쟁사 및 군사유물 연구, 호국인물 발굴 및 현양 및 기타 학예활동 •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와 교육 및 각종 관련 간행물의 작성, 배부 등

일반부록 22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법령 정비 현황(2012. 10. 1. ~ 2014. 10. 31.)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계
52	44	41	137

법률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제12791호(2014. 10. 14.)	• 벌금형 현실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12790호(2014. 10. 15.)	• 지뢰사고 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제12789호(2014. 10. 14.)	• 이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 • 이사회 소집요건 강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제12788호(2014. 10. 14.)	• 배우자와 이혼 후 61세 이후에 재결합한 경우 그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제12787호(2014. 10. 14.)	• 군 자녀 기숙사 입사 대상 조정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제12786호(2014. 10. 14.)	• 감사 권한 강화 및 임원의 책임규정 마련 • 직원의 임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제12785호(2014. 10. 14.)	• 징계부가금 부과 근거 신설 • 징계시효를 2→3년으로 연장 • 당연퇴직 사유에 수뢰·횡령 등을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병역법」	일부개정 제12684호(2014. 5. 28.)	• 징병검사 전담의사의 수련병원을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한정 • 모집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도 징집병과 마찬가지로 여비 지급 • 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2599호(2014. 5. 20.)	• 국방부장관이 직접 군교도소를 설치·운영 • 군 교정행정의 일부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위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제12598호(2014. 5. 20.)	• 일반군무원의 업무 분야에 예비전력관리 업무 신설 •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계약직 군무원을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 • 별정군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제12568호(2014. 5. 9.)	• 형사처벌 중 금고형을 삭제하여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 • 벌금형 현실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2567호(2014. 5. 9.)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 6개월 연장 • 벌금형 현실화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제12566호(2014. 5. 9.)	• 벌금형 현실화
「징발법」	일부개정 제12565호(2014. 5. 9.)	• 과도한 법정형 조정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2564호(2014. 5. 9.)	• 벌금형 현실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2563호(2014. 5. 9.)	• 벌금형 현실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제12562호(2014. 5. 9.)	• 벌금형 현실화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2561호(2014. 5. 9.)	• 벌금형 현실화
「병역법」	일부개정 제12560호(2014. 5. 9.)	• 지방병무청의 전시 병무행정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근거 마련 •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 취득 인정 확대 • 병역면제자의 장애 상태가 변한 경우 징병검사 실시 가능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제12559호(2014. 5. 9.)	• 방위력개선 분야 국방중기계획 수립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조정 • 무기체계 소요결정 및 수정 권한을 국방부장관에서 합동참모의장으로 조정 • 무기체계 시험평가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조정
「방어해면법」	일부개정 제12558호(2014. 5. 9.)	• 벌금형 현실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제12557호(2014. 5. 9.)	•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기준에 "특별자치시" 추가 • 벌금형 현실화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 제12556호(2014. 5. 9.)	• 벌금형 현실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2555호(2014. 5. 9.)	• 벌금형 현실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2554호(2014. 5. 9.)	• 벌금형 현실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2553호(2014. 5. 9.)	• 법정형의 편차 조정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제12552호(2014. 5. 9.)	• 벌금형 현실화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제12405호(2014. 3. 11.)	• 동원 명령 또는 훈련을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제12404호(2014. 3. 11.)	• 전쟁기념사업회의 이사회 기능 명시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2403호(2014. 3. 11.)	• 군인 기본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약사 의무장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전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제12402호(2014. 3. 11.)	• 군인의 봉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정 • 보수를 현금 외에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전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제12401호(2014. 3. 11.)	•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던 전투기, 함정 등의 무기를 '군수품'으로 변경하여 관리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 제12400호(2014. 3. 11.)	• 군사기밀 불법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군사기밀 누설 및 불법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대상에 외국인(외국단체 포함) 추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2399호(2014. 3. 11.)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 군인에게 군 건강검진 실시의무 면제 • 정신건강 실태조사 근거 마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제12398호(2014. 3. 11.)	•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등 외부인사 포함
「군형법」	일부개정 제12232호(2014. 1. 14)	• 군인의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요건 구체화 및 형량 강화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2231호(2014. 1. 14)	• 기소휴직 제도 개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제12230호(2014. 1. 14)	• 군인의 복지사업의 재원 범위 확대 •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제12199호(2014. 1. 7)	•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함 • 벌금형 현실화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제11777호(2013. 5. 22)	• 외부강사가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금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1776호(2013. 5. 22)	•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추가 • 법률의 유효기간과 피해자 심사기간 연장
「군형법」	일부개정 제11734호(2013. 4. 5.)	• 성폭력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삭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11733호(2013. 4. 5.)	• 군 공항 이전과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1652호(2013. 3. 22.)	• 국군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강화 • 국군포로 위로지원금 지급방법 변경 •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지원 근거 마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제11639호(2013. 3. 22.)	•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직위 결원보충 근거 마련 • 계약군무원의 임용범위 확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제11638호(2013. 3. 22.)	• 일반학 과정 교육 담당자를 군인·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제11637호(2013. 3. 22.)	• 일반학 과정 교육 담당자를 군인·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제11636호(2013. 3. 22.)	• 공중방역수의사를 예비군에 편성하고 국외 이주자를 예비군에서 제외 • 동원·훈련의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 예비군대원의 신고로 단일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제11635호(2013. 3. 22.)	•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 건의 권한 부여 • 경계태세가 발령된 경우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제11634호(2013. 3. 22.)	• 보수지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봉급기준조사위원회 폐지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제11633호(2013. 3. 22.)	• 군인·군무원 신분이 아닌 교수의 신분보장 근거를 명확히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제11632호(2013. 3. 22.)	• 공적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기여금과 부담금 인상 • 보수 산정의 기초를 과세소득 중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 • 연급급여의 산정기준을 '전체 복무기간의 소득'으로 변경

대통령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국방부군비검증단령」	일부개정 제25647호(2014. 10. 8.)	• 부대 명칭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으로 변경 • 임무·기능 및 조직 재설계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 제25607호(2014. 9. 18.)	• 임무·기능 및 조직 재설계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584호(2014. 9. 2.)	• 군인복지기금의 용도 확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555호(2014. 8. 20.)	• 일반군무원의 직군과 직렬에 예비전력관리 직군 및 직렬 신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정 제25487호(2014. 7. 21.)	•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설치, 임무, 센터장의 임명, 하부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 제정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 제25466호(2014. 7. 16.)	• 재외무관 정원 증가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개정 제25465호(2014. 7. 16.)	• 육군 수사단과 인사사령부로 이원화된 헌병업무를 육군본부로 일원화 • 육군인사사령부의 임무에 인력획득 포함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 제25464호(2014. 7. 16.)	• 해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된 군사력 건설의 소요에 관한 권한을 해병대사령부의 직무에 반영 • 군사력 건설의 소요 제기를 군사력 건설의 능력 요청으로 간소화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5463호(2014. 7. 16.)	• 군사력 건설의 소요 제기를 군사력 건설의 능력 요청으로 간소화 • 기획관리참모부 및 시설실 신설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5462호(2014. 7. 16.)	• 군사력 건설의 소요 제기를 군사력 건설의 능력 요청으로 간소화 • 기획관리참모부 및 시설실 신설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5461호(2014. 7. 16.)	• 군사력 건설의 소요 제기를 군사력 건설의 능력 요청으로 간소화 • 기획관리참모부, 시설실, 의무실, 헌병실 신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403호(2014. 6. 27.)	• 군무원의 신규채용·승진 시 임명장 수여규정 신설 • 공로연수제도 위임조항 신설 • 셋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402호(2014. 6. 27.)	• 장관급 장교의 보직변경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정원직위 미운영 및 중복 직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385호(2014. 6. 17.)	• G-703의 항공작전기지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육군 제9715부대령」	일부개정 제25377호(2014. 6. 11.)	• "육군 제9715부대령"을 "육군 미사일사령부령"으로 명칭 수정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 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 제25361호(2014. 5. 28.)	• UDT, SSU, 특전사 요원에게 특수업무수행 등급 가중치 '나'급 부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25308호(2014. 4. 15.)	• 군공항이전사업단 신설과 그에 따른 인력 증원 •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와 군사시설 소음 대책 업무를 위한 인력 증원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개정 제25284호(2014. 4. 1.)	• 국군기무사령부가 방위사업청의 군사보안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136호(2014. 2. 5.)	• 2015년부터 여자사관생도 모집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038호(2013. 12. 30.)	• 군의·치의 장교 재임용심사제도 구체화 • 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설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5037호(2013. 12. 30.)	• 판매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기준 완화
「외국군인·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일부개정 제25005호(2013. 12. 17.)	• 서식 정비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004호(2013. 12. 17.)	•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용도와 배분비율 조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003호(2013. 12. 17.)	• 무기체계 소요결정 절차와 방위사업 계약방법 개선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 제24851호(2013. 11. 20.)	• 합동군사대학교 소속 국방정신전력원 설치
「군인복제령」	일부개정 제24811호(2013. 10. 30.)	• '계급장의 제식'에 명시된 직책계급장의 부여대상 확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4803호(2013. 10. 22.)	•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보상 지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24782호(2013. 10. 4.)	• 군 공항의 범위, 이전절차,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4765호(2013. 9. 26.)	• 수용자의 서신 봉함 제출 원칙과 예외 규정 마련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4691호(2013. 8. 20.)	• 사무처장의 임명 절차 및 사무처 직원의 충원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4690호(2013. 8. 20.)	• 지방자치단체 통합방위태세 추진 실적 평가기관 단일화 • 경찰주도 통합방위작전의 경우 필요시 군 작전지원반을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4643호(2013. 6. 28.)	• 과세소득의 범위와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4630호(2013. 6. 21.)	• 군무원의 근속승진 범위 확대 • 기능군무원 계급 중 기능10급 폐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4629호(2013. 6. 21.)	• 국군포로 정착지원 및 주거지원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4607호(2013. 6. 17.)	•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공군방공포병사령부령」	전부개정 제24580호(2013. 6. 11.)	• 공군방공포병사령부의 명칭을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로 변경 • 사령관에게 관할구역 내에서 군 풍기 유지·단속 권한 부여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령관에게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의 지휘·감독권한 부여
「공군방공관제단령」	전부개정 제24579호(2013. 6. 11.)	• 공군방공관제단의 명칭을 공군방공관제사령부로 변경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령관에게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의 지휘·감독권한 부여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 제24578호(2013. 6. 11.)	• 장교·부사관 정원을 각 군별 동일하게 편성하여 운영하던 원칙 폐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4536호(2013. 5. 22.)	• 중요 부서장의 범위에 육군 제9715부대사령관과 육군인사사령관 추가 • 국군 조직의 명칭 정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4402호(2013. 3. 18.)	• 단계별 감항성 심사 및 감항인증 절차 적용제외 사업 명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4401호(2013. 3. 18.)	• 국군간호사관학교가 국직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군의무사령관의 교수추천 절차 폐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4379호(2013. 2. 20.)	•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위원 확대 •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인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신체장애등급 4급 신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4378호(2013. 2. 20.)	• 예비군 자원 감소에 따른 예비군 편성 지역 조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4349호(2013. 2. 5.)	• 하나의 대지에 있는 건축물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신고 수리 전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부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29호(2014. 10. 20.)	• 제조·판매 장부 보존기간 단축 • 유사군복을 사용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범위에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 추가
「군 법무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28호(2014. 10. 14.)	•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무장교의 선발대상자 명단 통보, 선발인원 결정 및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방위산업에 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제827호(2014. 9. 11.)	• 원가절감유인계약에 관한 규정 정비 • 원가절감보상계약 등의 개산계약금액 조정 • 한도액계약의 계약금액 결정 방식 구체화 • 성과기반계약의 기준계약금액과 성과금 구체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26호(2014. 9. 5.)	•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 반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25호(2014. 8. 29.)	•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 반영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24호(2014. 7. 8.)	• 잠수함 승조원 지원 장려금 신설 • 병 함정 출동가산금 지급 대상에 근무지원정 및 경비작전 수행인원까지 확대 • 계측기호 조기경보 업무 종사자에게 군인 등의 장려수당 5호 지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23호(2014. 7. 2.)	• 임용연령을 초과하여 임용된 사람은 초과 기간만큼 상한연령 연장 • 헬기조종 또는 통번역 준사관 후보생 선발자를 준사관 임용대상에 추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22호(2014. 6. 25.)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에서 G-703 삭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21호(2014. 4. 30.)	•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 신설 • 국방홍보원의 복수직급 정원의 상한 규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20호(2014. 2. 28.)	• 직렬별 공무원 정원 조정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19호(2014. 2. 17.)	• 허가신청서 서식 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18호('14. 2. 12.)	• 군수품 분류 순서 정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17호(2014. 1. 16.)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 정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16호(2014. 1. 14.)	•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과 무기체계 소요결정 절차 정비 • 창정비와 성능 개량 통합추진 근거 마련 • 군용총포 등의 운반 절차 규정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 제815호(2014. 1. 3.)	• 착·중도금 지급 활성화와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절차 개선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14호(2013. 12. 27.)	• 군종장교 서류심사 기준 완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13호(2013. 12. 24.)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12호(2013. 12. 24.)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11호(2013. 12. 12.)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10호(2013. 12. 12.)	• 정부 통합정원제에 따른 정원감축사항 반영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09호(2013. 12. 12.)	• 정부 통합정원제에 따른 정원감축사항 반영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08호(2013. 12. 4.)	• 공익근무요원 명칭·체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및 절차 마련 • 병역면제 시 징병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확대
「군표창규칙」	일부개정 제807호(2013. 12. 3.)	•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06호(2013. 10. 11.)	• 국방로봇·선도기술산업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및 정부3.0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 국·과장급 개방형직위 변경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805호(2013. 10. 10.)	• 방산업체 공정 효율화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원가항목 추가 및 수정 •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동일한 일반관리비율 상한 적용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04호(2013. 10. 4.)	•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감시를 위한 인력 증원 • 개인정보보호 기능강화 및 정부3.0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03호(2013. 9. 17.)	•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와 정부3.0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02호(2013. 7. 19.)	• 예비역 부사관의 재임용 근거 마련 • 심신장애 대상 세분화와 등급 수 조정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01호(2013. 7. 1.)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이 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 등에 위임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800호(2013. 6. 26.)	• 국군포로 위로지원금 지급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취업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 규정
「국방 분야 국가자격에 관련 규칙」	일부개정 제799호(2013. 6. 26.)	•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798호(2013. 6. 18.)	•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해 군무원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개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797호(2013. 5. 8.)	• 선박 및 함정 등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병의 근무수당 인상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 제796호(2013. 4. 4.)	• 개인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795호(2013. 3. 23.)	• 고객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직감사담당관으로 이관 • 공통·지원부서의 정원 감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794호(2013. 3. 23.)	• 병무청의 하부조직과 그 기능을 조정 • 공통·지원부서 정원 감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793호(2013. 3. 23.)	• 민원팀장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직무감찰담당관으로 이관 • 공통·지원부서 정원 감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792호(2013. 3. 18.)	• 수출용 군용항공기 외의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 개선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791호(2013. 2. 28.)	• 신체장애등급 4급을 결정하는 기준 마련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790호(2013. 2. 21.)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7명을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으로 전환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789호(2013. 1. 24.)	•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별도 정원 운용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4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제19대 국방위원 명단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2급 권기원	1급 성석호

위 원 장		
성명	학력 및 경력	연락처
황진하	**경기 파주시을 : 3선** 1946년생, 육사 25기, 미국 센트럴미시건대학원, 주미국방무관, 유엔평화유지군사령관, 국회 외통위 간사,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제2정조위원장·정책위부의장, 국회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회장	본관 : 421호 전화 : 784-1364, 788-2347 팩스 : 788-3685

입법조사관
3급 김학배
3급 오정두
4급 임명현
4급 김태규
4급 이현종
5급 강건희

	성 명	학력 및 경력	연락처
새누리당 (9)	김성찬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1954년생, 진해고, 해사 30기, 1함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세종대 석좌교수 **현)국방위간사**	의원회관 : 421호 전화 : 784-2477~8 788-2103 팩스 : 788-0136
	김세연	**부산 금정구 : 재선** 1972년생,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비상대책위원·원내부대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	의원회관 : 1009호 전화 : 784-2844~5 788-2839 팩스 : 788-0138
	손인춘	**비례대표 : 초선** 1959년생, 건국대 대학원 벤처 전문기술학 박사, 육군중사, (주)인성내츄럴 사장,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의원회관 : 544호 전화 : 784-8690~1 788-2437 팩스 : 788-0231
	송영근	**비례대표 : 초선** 1947년생, 육사 27기, 경희대 경영학 석사, 보병제1사단장, 3사관학교장, 국군기무사령관, 한국과학재단 초빙교수	의원회관 : 313호 전화 : 784-8780~1 788-2442 팩스 : 788-0233
	정미경	**경기 수원시을 : 재선** 1965년생,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시 38회,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한나라당 대변인,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겸 홍보위원장	의원회관 : 633호 전화 : 784-9480~1 788-2482 팩스 : 788-0242
	주호영	**대구 수성구을 : 3선** 1960년생,영남대 법학박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초대 특임장관, 한나라당 원내수석, 여의도 연구소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의원회관 : 514호 전화 : 784-2055~6 788-2137 팩스 : 788-0369
	한기호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 재선** 1952년생, 육사 31기, 육군2사단장, 육군군육사령관,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장,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최고위원	의원회관 : 337호 전화 : 784-2174~5 788-2252 팩스 : 788-0383
	홍철호	**경기 김포시 : 초선** 1958년생, 예산 농전 졸업, (주) 크레치코 회장, 김포상공회의소 부회장,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변인	의원회관 : 821호 전화 : 784-5961~2 788-2220 팩스 : 788-0278

	성 명	학력 및 경력	연락처
새누리당	황우여	**인천 연수구 : 5선** 1947년생,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해군 법무관, 감사원 감사위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새누리당 당대표최고위원	의원회관 : 848호 전화 : 784-4467~8 788-2017 팩스 : 788-0398
새정치민주연합 (7)	윤후덕	**경기 파주시갑 : 초선** 1957년생, 연세대 경제학 석사, 노무현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순천향대 초빙교수, **현)국방위간사**	의원회관 : 943호 전화 : 784-5041~2 788-2587 팩스 : 788-0287
	권은희	**광주 광산구을 : 초선** 1974년생, 전남대 법학과 졸업, 사시 43회, 경찰청 경정 특채,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의원회관 : 532호 전화 : 784-1813 788-2670 팩스 : 788-0307
	김광진	**비례대표 : 초선** 1981년생, 순천대 조경학과 졸,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사무국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의원회관 : 610호 전화 : 784-1422~3 788-2029 팩스 : 788-0118
	문재인	**부산 사상구 : 초선** 1953년생, 경남고, 경희대 법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의원회관 : 325호 전화 : 784-6801~2 788-2236 팩스 : 788-0189
	백군기	**비례대표 : 초선** 1950년생, 육사29기, 육군31사단장, 육군특전사령관, 제30야전군사령관, 육군대학 총장, 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위원장	의원회관 : 324호 전화 : 784-8430~1 788-2398 팩스 : 788-0221
	안규백	**서울 동대문구갑 : 재선** 1961년생, 성균관대 및 동대학원 무역대학원 수료, 민주당 원내부대표, 통합민주당 조직위원장 동국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의원회관 : 428호 전화 : 784-4180~1 788-2601 팩스 : 788-0249
	진성준	**비례대표 : 초선** 1967년생, 전북대 법학과 졸, 민주화운동 3년6개월 투옥,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대변인, 민주당 원내부대표	의원회관 : 645호 전화 : 784-9671~2 788-2873 팩스 : 788-0371

국회 국방위원회 주요 활동(2012. 12. 9. ~ 2014. 10. 31.)

회 기	회의 일자	주요 내용
제313회 임시국회 (2013. 2. 4.~3. 5.)	2013. 2. 6.	• 국방부 현안업무 보고(북한 핵실험 관련) • '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3. 2. 12.	• 북 3차 핵실험 관련 업무 보고 • 북한의 핵실험 규탄결의안(위원회안)
	2013. 2. 26.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013. 3. 5.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제314회 임시국회 (2013. 3. 8.~3. 22.)	2013. 3. 8.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추가 상정 건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건
	2013. 3. 9.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제314회 임시국회(폐회 중)	2013. 4. 4.	• 국방부 소관 업무 보고 및 정책질의
제315회 임시국회 (2013. 4. 8.~5. 7.)	2013. 4. 8.	• 병무청 소관 업무 보고
	2013. 4. 10.	• 방위사업청 소관 업무 보고
	2013. 4. 15.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 상정 /법안소위 회부
	2013. 4. 22.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 의결 • 고(故)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 의결
	2013. 4. 25.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의결
제316회 임시국회 (2013. 6. 3.~7. 2.)	2013. 6. 14.	• 국방부 현안업무 보고(대북 군사대비태세 등)
	2013. 6. 18.	• 국방부 현안업무 보고(F-X사업 추진 현황 등)
	2013. 6. 26.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 27건 의결
제320회 정기국회 (2013. 9. 2.~12. 10.)	2013. 9. 3.	• 국방부 현안업무 보고(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2013. 10. 14.~11. 2.	• 국정감사(국방부, 합참 등 57개 기관)
	2013. 10. 11.	• 합참의장 후보자(최윤희) 인사청문회
	2013. 10. 14.	• 합참의장 후보자(최윤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2013. 12. 5.	• 국방부 현안업무 보고 •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 의결
제321회 임시국회 (2013. 12. 11.~2014. 1. 3.)	2013. 12. 13.	• 2014년도 예산안 의결
	2013. 12. 23.	• 국군의 해외파견 연장동의안(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3건 의결 •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95건 상정 / 법안소위 회부
	2013. 12. 30.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 의결
제322회 임시국회 (2014. 2. 3.~2. 28.)	2014. 2. 19.	• 국방부 업무 보고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6건 상정 / 법안소위 회부
	2014. 2. 26.	•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2건 의결 •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322회 임시국회(폐회 중)	2014. 3. 5.	• 국방부 현안업무 보고(북한 동향 관련)
제323회 임시국회 (2014. 3. 20.~4. 18.)	2014. 4. 9.	• 국방부 현안업무 보고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 의결
	2014. 4. 11.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회 기	회의 일자	주요 내용
제324회 임시국회 (2014. 4. 19.~5. 18.)	2014. 4. 30.	• 국방부 현안업무 보고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 의결
제326회 임시국회 (2014. 6. 18.~7. 17.)	2014. 6. 25.	• 국방부 현안업무 보고(동부전선 GOP소초 총기사건 관련)
	2014. 6. 29.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한민구) 인사청문회
	2014. 7. 3.	• 국방부 업무현황 보고
	2014. 7. 11.	•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327회 임시국회 (2014. 7. 21.~8. 19.)	2014. 8. 4.	• 국방부 현안업무 보고(28사단 사건 관련)
	2014. 8. 21.	• 군 인권 향상 및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공청회
제329회 정기국회 (2014. 9. 1.~12. 9.)	2014. 10. 1.	•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 201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14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2014. 10. 7.~10. 27.	• 국정감사(국방부, 합참 등 63개 기관)

찾아보기

ㄱ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47, 152
공세제공훈련 71
공해전투 15
과학화 경계시스템 51, 161
과학화전투훈련단 69
관련약정 118
국가비전 34, 37
국가안보목표 34, 38
국가안보전략 2020 18
국가안보전략 기조 35, 38
국군중증외상센터 193
국방 사이버 방호 기본계획 101
국방 우주력 60, 61
국방3.0 216, 217
국방개혁 기본계획 78, 79
국방경영기획 평가단 162
국방과학연구소 84, 169
국방규제 개선 198
국방동원정보체계 89
국방목표 37, 38
국방비 158
국방비전 37, 38
국방운영 4대 중점 39
국방운영 개혁 79, 83
국방재능기부은행 179
국방전직교육원 191, 192
국방정보기술표준 101
국방정보화기본계획 99
국방정신전력원 67
국방정책 7대 기조 38
국방협력활동 137
국제군수협력 27
국제안보지원군 9, 135
국제안보포럼(HISF) 127
국제평화지원단 140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 125, 126
군 구조 개혁 79
군 보건의료발전 계획 188
군 보육시설 186
군 복무 보상점제도 193
군 책임운영기관 84, 163
군대윤리 180
군비경쟁 14
군사독트린 18
군사시설 보호구역 200, 201
군사위원회 116
군수통합정보체계 95, 96
군수품 현장관리자동화체계 95
군인연금제도 194
군인복지기본계획 181, 182
권역화 자원관리체계 83
근접항공지원작전 47
근접항공지원훈련 71
기뢰작전 46
김일성-김정일주의 20

ㄴ

남북 군 통신선 152
남북 불가침 합의서 146

ㄷ

다국적군 평화활동 134
다련장 45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130
대륙간탄도미사일 18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 130
대잠작전 46
대체복무제도 213
대함작전 46
대확산 130
독립국가연합 124
독수리 훈련 73, 108
동경방위포럼 129
동명부대 131
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 117
동북아협력대화 129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 10
동원보충대대 52, 89
동원예비군 90

ㅁ

마일즈 68, 69, 92
말레이시아 실종항공기 탐색지원 139
맞춤특기병제도 213
맞춤형 수출정책 172
모의장비훈련 69
무기거래조약 129
미·일 방위협력지침 15, 16
미·필리핀 방위협력확대협정 15
미래사령부 119
민간개방 기본계획 163, 164

ㅂ

바세나르체제 130
반접근 및 지역거부 15
방공식별구역 220
방어제공훈련 71
방위계획대강 16
방위력개선사업 165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10
방위장비 이전 3원칙 17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214
병영문화쉼터 185
병영생활관 현대화 184
병영생활전문상담관 84
복지인프라 185
북대서양조약기구 10
북방한계선 22, 50
비무장지대 25, 148
비정상의 정상화 198, 199
비행정보구역 110
비확산 129
빅데이터 100

ㅅ
사물인터넷 100
사이버 방호 수행체계 101
사이버 침입 감내기술 54
사회복무제도 213
상근예비역 214
상설군사위원회 114
상호군수지원협정 97, 98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20
서북도서방위사령부 46
서울안보대화 127, 225
선택적계약제도 93
성과기반군수지원제도 94
성분훈련 70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 11
수색 및 구조훈련 70
순항훈련 70
시차별부대전개제원 48
신속억제방안 48
신연합방위추진단 115
신형대국관계 8

ㅇ
아라우부대 138, 139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54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 55
아시아 안보회의 128
아시아 재균형 전략 14, 15
아시아 패러독스 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120
아크부대 137, 138
야외기동훈련 73
야전운용시험 166
야전정비지원센터 95
에볼라 대응 군 의료인력 파견 139
연합작전 52
연합지휘통제체계 117
연합토지관리계획 109
예비전력 89
오쉬노부대 135
용산기지이전계획 109
유급지원병제도 212, 213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 131
유엔 평화유지활동국 141
유엔 평화유지활동 131
유엔 임무단 옵서버 134
유엔 정전감시단 131
유해발굴감식단 204, 205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74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 9
임관종합평가제 66

ㅈ
자카르타 국제국방회의 128
장기계속계약 93
재난지원체계 208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199, 206
전략군 28
전략동맹 2015 116
전략무기 28
전략물자 129
전략적전환계획 115
전략지시 제3호 118
전략커뮤니케이션 118
전력소요검증위원회 166
전력지원체계 97
전사자 유해 발굴 204
전술담임교관제 66, 67
전시작전통제권 114
전쟁지속능력 93
정전협정 151
전투지휘훈련 69
정보화 조건 하 국지전 승리 17
제공작전 47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18, 119
주공급자제도 96
주한미군 지위협정 110
중기 전력 증강 계획 87
중기방위력정비계획 16
지방재건팀 10, 135
지휘소연습 72

ㅊ
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 206
창조적 국방연구개발 169

찾아보기

청해부대 54, 135

ㅋ

칸퀘스트 훈련 124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반 101
키리졸브 연습 73, 146
킬체인 57, 58

ㅌ

태극연습 72
테러 대비태세 53
통합방위기구 62
통합방위사태 63
통합방위태세 147, 152

ㅍ

피스웨이브 132

ㅎ

한국방공식별구역 220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58, 59
한도액성과계약 93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49, 108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56, 57
한미 연합 생물방어연습 60, 130
한미국방협력지침 106
한미군사위원회회의 117, 118
한미군수협력위원회 97
한미동맹 60주년 10대 기념사업 112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107
한미동맹 공동비전 106
한미상호방위조약 106
한미안보협의회의 56
한미통합국방협의체 108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46, 147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22
한빛부대 133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 120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121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101
합동작전 52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 74
항공차단작전 47
항공차단훈련 71
해상훈련 70
해외파병 상비부대 140
핵우산 56
향방예비군 90
호국훈련 73
화랑훈련 63
화학무기금지기구 129
확산탄금지협약 130
확장억제 56
확장억제정책위원회 56
환태평양훈련 70
훈련보류자 91

2·29 미·북 합의 23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 15
4D 57
5·24 조치 151

A

A2/AD 15
Able Response 60, 130
ADEX 125, 126
ADMM-Plus 55
AI 47
AKJCCS 117
ALL-IP 기반 100
APEC 123
ARF 54
ARF-DiREx 71
ASEAN 9
ASOC 81
ATT 129

B

BCTP 69
BSC 74

C

C4I 49
CA 47
CAS 47
CCM 130
CERT 101
CGPCS 11
CIS 124
CPX 73
CTF-151 16, 135

D

DITA 101
DMZ 25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148, 149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148
DPKO 141

E

EDPC 56
ESCO WASCO 164

F

FDO 48
FE 73
FTX 73

G

Good Neighbor Program 113

H

HEU 28
HISF 127

I

ICC 23
IGAD 10
IMB 11
ISAF 9
ISIL 9

J

JDAM 58
JIDD 128

K

KAMD 39
KIDD 108
KR 73

L

LPP 109
L-SAM 59

M

MC 116
MCM 108
MDL 22
MILES 68
MLRS 45
M-SAM 59

N

NATO 9
NEACD 129
NLL 22, 50

O

OPCW 129

P

PBL 94
Peace Wave 132
PKO분과 142
PKO센터 142
PMC 114
PRT 10
PSI 107

Q

QDR 15

R

RIMPAC 70, 257

S

SA 2015 115
SAREX 70, 257
SAWG 116
SCM 56
SMA 110
SOFA 110
SSA 61
STP 115

T

TDF 129
TPFDD 48

U

UFG 74
UNIFIL 131
UNTSO 131

W

WHO 11

Y

YRP 109

QR코드 찾아보기

국가안보전략 e-book 34

국군 공익광고 44

육군 홍보영상 45

해군 홍보영상 46

해병대 홍보영상 46

공군 홍보영상 47

육군 21사단 GOP 경계작전 49

특전사 제3공수 특전여단 특공무술 49

해군 특수전전단 공중침투작전 49

공군 특수부대 소개영상 49

국군 홍보영상 51

독도 홍보영상 51

육군 공지합동훈련 68

육군 과학화전투훈련 68

JSA 경비대대 폐쇄구역 근접전투 훈련 68

해군·해병대 합동상륙작전 70

림팩훈련 70

레드플래그 훈련 70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e-book 78

수리온 홍보영상 88

김좌진함 소개영상 88

예비군 공익광고 90

군수혁신 소개영상 96

한미동맹 60주년 다큐멘터리 112

서울안보대화 주제영상 127

국군 해외파병 홍보영상 131

한빛부대 홍보영상 133

아크부대 홍보영상 138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홍보영상 146

중국군 유해 송환 홍보영상 154

2014년 국방예산 홍보영상 160

함대지 및 잠대지 순항미사일 발사 166

블랙이글, 하늘길 5,400km를 열다 166

블랙이글 싱가포르 에어쇼 166

민군기술협력 박람회 개막영상 169

민군기술협력 홍보 애니메이션 169

FA-50 이라크 수출 홍보영상 169

열린 병영문화 정착 홍보영상 176

국방헬프콜 홍보영상 176

군인복지기본계획 (2013~2017) e-book 181

야전병원 24시 188

6·25전사자 유해 발굴 홍보영상 204

참전사실 확인사업 홍보영상 204

맞춤특기병제도 홍보영상 213